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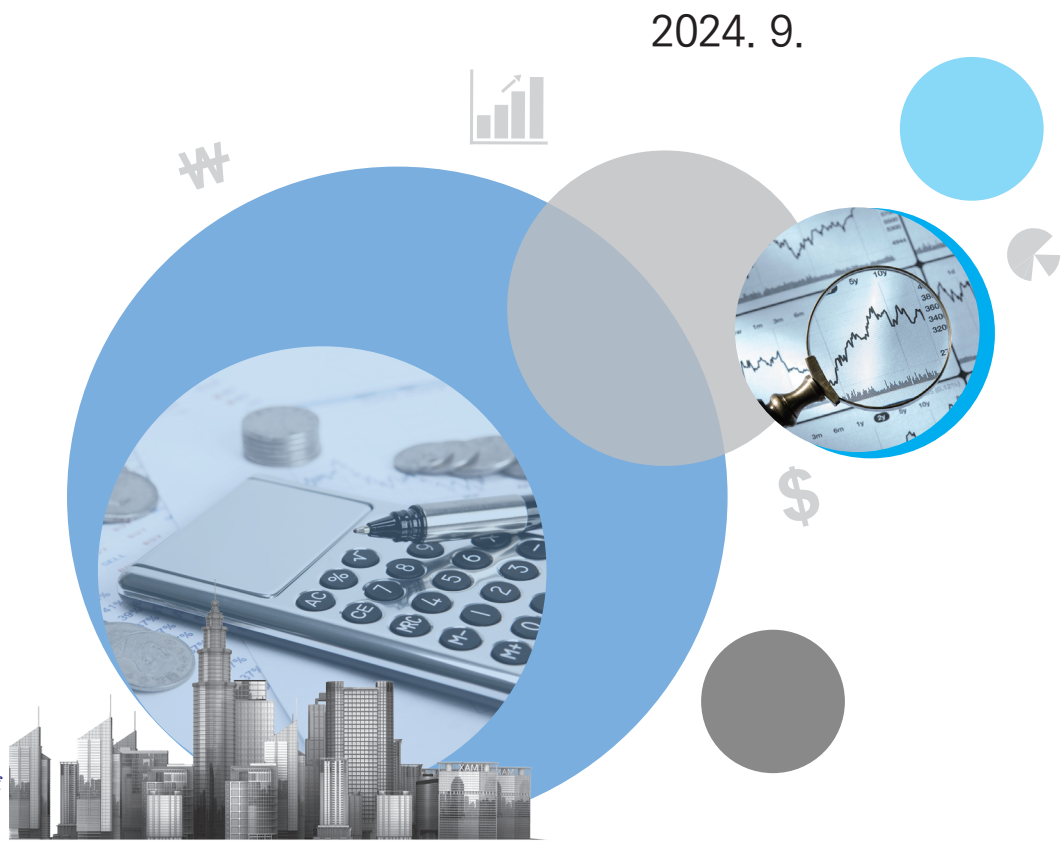
2024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24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24. 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24.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권성오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최승문 건국대학교 교수

2024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김 재 진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제도의 필요성 및 개선 가능성을 검토함
 - 전자신고¹⁾ 세액공제와 전자고지²⁾ 세액공제는 각각 2004년 1월 1일과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³⁾
 - (전자신고)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는 2만원, 부가가치세는 1만원 세액공제⁴⁾
 - (전자고지) 납부고지 1건당 1천원 세액공제⁵⁾

1. 타당성 분석

- 타당성 분석에서는 국내외 제도 검토 등 정성적 분석과 국세청 자료, 설문 조사 등을 이용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여 정책목적의 적절성, 정부 개입의 근거, 지원 수준의 적절성 등을 평가
 - (정책목적의 적절성) 전자신고·전자고지 조기 정착 및 활성화라는 정책목적이 적절한지 평가하기 위하여 명확성, 측정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검토함
 - (정부개입의 근거) 세목별 전자신고·전자고지 현황 분석을 통하여 제도 정착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등을 평가
 - (지원수준의 적절성) 현재 세액공제 수준의 적절성을 국세행정 비용 및 다른 제도의 절감액과 비교
 - (제도 간 중복 여부) 본 제도와 유사한 목적 및 기능을 가진 제도 및 정책을 검토함

1)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으로 신고하는 것
2) “전자고지”란 납세자에게 고지된 내용을 납세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세정보통신망에 수록하는 것
3)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4) 세액공제 한도는 세무대리인 300만원, 세무·회계법인 750만원
5) 전자고지 세액공제 대상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 (타당성 분석 1: 정책목적의 적절성) 본 제도의 목적은 전자신고·전자고지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유도

- 정책의 목적이 명확하며 전자신고율⁶⁾과 전자고지율⁷⁾ 등을 통해 목적의 달성도를 측정 가능
- 전자신고·전자고지 활성화는 관련된 행정비용 및 협력비용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되기에 바람직한 정책목적으로 판단
 - (행정비용 절감) 국세청은 관련 행정업무가 전산으로 처리되면서 행정의 효율성 및 신속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 (협력비용 절감) 납세자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신고 및 고지 내용 확인 등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음
 - (파급효과) 전반적인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정확한 과세자료수집과 처리를 통한 납세자 간 형평성 도모, 이를 통한 납세자 신뢰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 등 디지털 국세행정을 위한 다른 정책들과 일관된 목표로 판단

□ (타당성 분석 2: 정부 개입의 근거) 조세지출의 필요성은 현재 전자신고율 및 전자고지율 등이 바람직한 수준보다 낮아 개선의 여지가 있을 때 인정될 수 있음

- 모든 개인의 이질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전자신고율 및 전자고지율 추정은 어렵기 때문에, 전자신고율 및 전자고지율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것으로 가정
 - 고령자, 소상공인 등 디지털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진 납세자의 경우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 시 오히려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그 증가분이 세무행정 비용 절감분보다 클 수 있음
- 전자신고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는 상당 부분 달성된 것으로 판단됨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율은 2022년 기준 99.5%, 99.6%, 97.1%
 - 최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율은 2022년 기준으로 다른 세목에 비하여 낮은 수준
- 전자고지의 경우 제도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나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전자고지율은 세액공제의 도입 직전 연도인 2020년에 5.5%, 5.8%, 5.6%, 5.0%, 5.6%, 7.0%였으며, 2023년

6) 전체 신고 중 전자신고 비율

7) 전체 고지 중 전자고지 비율

에는 10.6%, 11.6%, 10.8%, 11.1%, 11.2%, 15.6% 수준

- 한시적으로 전자신고에 대한 지원제도를 운영한 영국과 일본의 경우 전자신고 제도 정착 등을 근거로 지원제도를 폐지함(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영국은 2004/2005 과세연도부터 2008/2009 과세연도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을 전자신고하는 50인 이하의 사업장에 현금보조금을 지급함
 - 일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개인소득세에 대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운영함
 - 전자고지 세액공제의 경우 유사한 해외 사례를 발견하지 못함

□ (타당성 분석 3: 지원 수준의 적절성) 현재 세액공제 수준을 국세행정 비용 절감액 및 유사 제도의 절감액과 비교

-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에 따른 국세행정 비용 절감액⁸⁾은 적정 지원수준의 상한선으로 간주할 수 있음⁹⁾
 - (전자신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은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이며, 국세청의 서면신고 과세자료 등 입력비용(=서면신고 및 과세자료 등 입력비용 예산 ÷ 서면신고 건수)은 건당 5,613원¹⁰⁾
 - (전자고지) 전자고지 세액공제 금액은 1,000원이며,¹¹⁾ 국세청의 서면고지 비용(= 등기우편 및 일반우편 발송 비용 ÷ 발송건수)은 건당 2,466원¹²⁾
- 유사 제도의 지원수준은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¹³⁾
 - 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은 종합소득 및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2,000원¹⁴⁾
 - 국민연금의 경우 이메일 고지를 신청하면 200원¹⁵⁾ 감액(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혜택 없음)
 - 서울시에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해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 세액감면¹⁶⁾

8) 자료의 한계로 서면신고·서면고지 비용을 전자신고·전자고지의 행정비용 절감액으로 가정함

9)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행정비용 절감액 이상의 세액공제를 제공할 필요는 없음

10) 2022년 기준

11) 전자고지 세액공제 대상 세목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12) 2023년 기준

13) 유사 제도의 절감액을 해당 제도 및 본 세액공제의 적정 지원수준으로 보기 어려움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3(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15) 독촉고지서를 제외한 정기고지서만 해당

- 적정 세액공제 수준의 중요한 결정요인은 납세자의 행태변화인데, 이는 효과성 분석에서 다룸
- (타당성 분석 4: 예산 사업과 중복 여부 등) 본 제도와 유사한 목적 및 기능을 가진 제도 및 정책을 검토함
 - 본 제도와 같이 ‘전자신고·전자고지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유도’라는 목적을 가진 예산 사업은 없음
 - 단, 국세청의 전자세정 관련 사업은 전자신고·전자고지 제도의 활성화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 간소화 등 전자세정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확대는 전자신고와 전자고지 활성화의 필수 요건
 - 특히, 전자세정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영세납세자 및 고령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은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 제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국세청은 2022년부터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전담팀’을 구성하여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안내 확대, 부가가치세 대화형 신고 확대, 양도소득세 모두채움시행 등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음

2. 효과성 분석

- 효과성 분석에서는 제도 목적 달성 여부 및 수혜자들의 행태변화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함
 - 이중차분법 등 준실험적 방법론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정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세목 등을 통제군으로 활용하여 본 제도가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 활성화에 미친 영향을 추정함
 - 제도 시행 등 주요 제도개편 전후 전자신고율 및 전자고지율 비교
 - 설문조사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본 제도의 폐지 등 가상적인 상황에서 수혜자의 행태변화 여부 등 정책대상자의 인식을 분석함

16) 상하수도요금의 전자송달 혜택은 전당 수도요금의 1%(200~1,000원)가 감면됨

-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효과성 분석) 주요 제도개편 전후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 비율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분석함
 - (제도개편) 전자신고의 경우 2004년 제도 도입, 2021년 양도소득세 포함 등의 제도 변화 전후를 비교하였으며, 전자고지의 경우 2021년 제도 시행 전후를 비교함
 - (통제군) 전자신고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세목 등을 통제군으로 활용하였으며, 전자고지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사용률 등 본 제도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고 전자세정 활성도를 반영하는 지표를 대조군으로 활용함

-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효과성 분석 1: 전자신고율) 2004년 제도 시행, 2021년 양도소득세 포함 등의 제도 변화 전후 전자신고율을 비교하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세목 등을 통제군으로 활용
 - 총 5건의 제도개편 영향을 분석
 - 2004년 제도 시행: 전자신고는 2002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2004년 1월부터 시행됨
 - 2008~2009년 개편: 2008년 공제금액이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한도액은 100만원(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경우 300만원)에서 300만원(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경우 500만원)으로 확대
 - 2012년 개편: 공제한도가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는 400만원,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은 1천만원으로 확대
 - 2019년 개편: 2019년부터 공제한도가 세무대리인은 300만원, 세무대리법인은 750만원으로 축소
 - 2021년 개편: 2021년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가 시행
 - 분석기간에 따라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세목을 처치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세목 등을 대조군으로 설정한 이중차분법을 실시
 - 2021년 개편 이외의 분석에서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의 3개 세목을 처치군으로, 전자신고는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원천세와 본 제도와 무관하게 납세자들이 전산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비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이용률을 대조군으로 정의하는 이중차분법 분석을 실시

- 2021년 이후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실험군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제도의 변화가 없었던 다른 세목을 대조군으로 설정
 - 분석 결과 전자신고 세액공제 시행 및 주요 제도 개편이 전자신고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즉, 본 제도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함
-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효과성 분석 2: 전자고지율) 2021년 전자고지 세액공제 시행 전후 세목별 전자고지율 변화를 비교함
- 2021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에 대하여 종이 우편이 아닌 전자문서의 형태로 전자고지를 받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
 - 2021년 전후 큰 제도 변화가 없었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의 전자신고율,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원천세의 전자신고율,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사용률을 대조군으로 정의함
 - 분석 결과 전자고지 세액공제 도입이 해당 세목의 전자고지율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제도 도입 초기라는 점은 감안할 필요 있음
- (설문조사를 이용한 분석) 개인사업자의 제도 인지도, 수혜자의 행태변화 여부 등 정책대상자의 인식을 분석함
- 국세청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이중차분법 등 준실험적 방법론으로 정책의 효과를 식별하고자 하였는데, 정책대상의 지정이 무작위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치에 편의가 존재할 수 있음
 - 이에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세액공제 폐지 등 가상적인 상황에서 수혜자의 행태변화를 분석하여 보완하고자 함
 - 세무대리인에 대한 설문은 기존 심층평가(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에서 이루어졌으며, 본고에서는 국세청 자료를 이용한 효과분석에서 세무대리인에 대한 지원 수준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 가능성을 검토함
 - 2024년 7월 10일 ~ 2024년 7월 18일에 503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 기업 DB에서 ‘개인사업자’로 구별되어 있는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광역시도 기준으로 정렬된 명부에서 계통 추출하여 선정된 사업체를 표본 단위로 지정

- 각 사업체 내에서 대표자 또는 세무 관련 업무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전화면접조사를 수행하여 정보를 수집함

□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전자신고를 한 응답자들 중에 전자신고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중은 6.7%에 불과함
 - ‘서면신고에 비해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36.4%), ‘세무대리인의 의견에 따름’(27.4%), ‘신고서상 오류확인과 정정이 편리해서’(15.5%)
- 전자신고 사업자에게 현 공제 제도가 폐지될 경우 전자신고 유지 의향에 대해 질문했을 때 긍정 비율이 88.1%로, 세액공제 금액 절반 축소 가정 시 긍정 비율(90%)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를 알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할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물었을 때,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절반 수준(51.1%)으로 나타남

□ 전자고지 세액공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 사업자에게 이용 이유를 물었을 때, ‘전자고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라고 답한 비율은 9.6%로 낮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전자고지 비(非)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때, ‘전자고지에 대한 인센티브(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3.9%에 불과함
- 전자고지 비이용 사업자들에게 현 기준의 공제금액(1건당 1천원)을 2배로 인상할 경우 전자고지 이용 의향에 대해 질문했을 때, 긍정 비율은 68.5%로 현행 공제금액일 때와 비교하여 8.7%p로 증가함
- ‘전자고지 세액공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37.4%이며, 그들 중에 공제금액을 알고 있는 비율은 27.7%

3. 결론 및 개선방안

-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전자신고율이 100%에 가까운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축소할 필요
 - 전자신고율 증대의 여지가 적으며, 세액공제 축소 시 서면신고 전환 등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미리채움 서비스 등 전자신고의 편의성을 고려하면 행태변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국세청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본 제도의 전자신고율 증대효과가 발견되지 않음
 - 설문조사를 이용한 분석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본 제도와 무관하게 전자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영세사업자의 경우 조세 지원보다는 전자신고의 편리성을 높이는 것이 전자신고율 향상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국세청은 2022년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영세납세자가 세금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자신고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음

- 전자고지와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의 경우 향후 제도 활성화 추이에 따라 세액공제 축소 여부를 고려할 수 있음
 - 2023년 기준 전자고지율은 세목에 따라 11~16% 수준, 2022년 기준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율은 48.6%로 제도 활성화의 추가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됨
 - 향후 전자고지율과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율의 증가폭이 완만해지면 세액공제 축소를 검토할 수 있음

목 차

I. 서론	17
II. 제도 현황	21
1. 전자신고 세액공제 조세지출 적용 실적	23
2. 법인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24
가. 법인세 전자신고 현황	24
나. 법인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현황	26
3. 종합소득세	29
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현황	29
나.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현황	31
다. 종합소득세 전자고지 세액공제 현황	35
4. 부가가치세	36
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현황	36
나.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현황	37
다. 부가가치세 전자고지 세액공제 현황	40
5. 전자고지	40
III. 제도 개요	43
1. 제도 목적	45
2. 정책대상자	45
3. 수혜내용	46
가. 전자신고를 하는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46
나.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	46
다. 전자고지 신청에 대한 세액공제	47
4. 제도 연혁	47

IV. 타당성 분석	49
1. 정책목적의 적절성	51
2. 정부개입의 근거	52
3. 지원수준의 적절성	54
가. 전자신고	55
나. 전자고지	56
4. 제도 간 중복 여부	56
V. 국세청 자료를 이용한 효과성 분석	59
1.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효과성 분석	62
가. 제도 시행 전후 비교 분석	64
나. 이중차분법 분석	68
2.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도입의 효과성 분석	73
3. 전자고지 세액공제의 효과성 분석	74
VI. 설문조사를 이용한 효과성 분석	77
1. 조사 개요	79
2. 표본 특성	80
가. 세무대리인 고용 여부	81
나.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82
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여부	84
라.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85
3. 전자신고 이용 행태	86
가. 세금 신고 방법	86
나. 전자신고 주체	88
다. 전자신고 선택 이유	89
라. 서면신고 선택 이유	91
4.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대한 인식	92
가. 전자신고 세액공제 인지도	92

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 인지도	93
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 인지도	95
라. 전자신고 선택 의향(서면신고 사업체)	96
마. 세액공제 2배 인상 시 전자신고 선택 의향(서면신고 사업체)	97
바. 세액공제 2배 축소 시 전자신고 유지 의향(전자신고 사업체)	98
사. 세액공제 폐지 시 전자신고 유지 의향(전자신고 사업체)	99
아. 세액공제 전자신고 활성화 기여도	100
자. 전자신고 편리성 공감도	102
5. 전자고지 이용 행태	103
가.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 여부	103
나. 전자고지 선택 이유	104
다. 전자고지 비이용 이유	106
6. 전자고지 세액공제에 대한 인식	107
가. 전자고지 세액공제 인지도	107
나. 전자고지 세액공제 인지 항목수	108
다. 전자고지 세액공제 금액 인지	110
라. 전자고지 선택 의향(전자고지 비이용 사업체)	111
마. 세액공제 2배 인상 시 전자고지 선택 의향(전자고지 비이용 사업체)	112
바. 세액공제 2배 축소 시 전자고지 유지 의향(전자고지 이용 사업체)	113
VII. 요약 및 시사점	115
참고문헌	119

표 목 차

<표 II-1> 전자신고 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23
<표 II-2> 법인세 전자신고 현황	25
<표 II-3> 법인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현황	27
<표 II-4> 법인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비율	29
<표 II-5>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현황	30
<표 II-6>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인원 현황	31
<표 II-7>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현황	33
<표 II-8> 소득구간별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신고 비율	34
<표 II-9>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비율	35
<표 II-10> 종합소득세 전자고지 세액공제 현황	36
<표 II-11>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현황	37
<표 II-12>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 전자신고 세액공제 현황	38
<표 II-13> 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자 전자신고 세액공제 현황	39
<표 II-14> 부가가치세 전자고지 세액공제 현황	40
<표 II-15> 전자고지 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41
<표 II-16> 세목별 전자고지율	41
<표 IV-1> 세목별 전자신고율	53
<표 V-1> 2022년 주요 세목별 전자신고 현황	63
<표 V-2> 2004년 제도 시행이 전자신고비율에 미친 영향 분석	65
<표 V-3> 2008~2009년 제도 개편이 전자신고비율에 미친 영향 분석	66
<표 V-4> 2012년 제도 개편이 전자신고비율에 미친 영향 분석	67
<표 V-5> 2019년 제도 개편이 전자신고비율에 미친 영향 분석	67
<표 V-6> 이중차분법 회귀식에서 제도 개편 효과	69
<표 V-7> 고정효과 패널 이중차분법 회귀식에서 제도 개편 효과	70

<표 V-8> 2004년 제도 도입이 전자신고비율에 미친 영향 분석	70
<표 V-9> 2008년 제도 개편이 전자신고비율에 미친 영향 분석	71
<표 V-10> 2012년 제도 개편이 전자신고비율에 미친 영향 분석	72
<표 V-11> 2019년 제도 개편이 전자신고비율에 미친 영향 분석	73
<표 V-12>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도입이 전자신고비율에 미친 영향 (대조군: 원천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74
<표 V-13> 2023년 세목별 전자고지 비율	75
<표 V-14> 전자고지 세액공제 도입이 전자고지율에 미친 영향 분석 (대조군: 원천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	76
<표 VI-1> 최종 표본의 분포	80
<표 VI-2> 세무대리인 고용 여부(설문조사)	82
<표 VI-3>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분석(설문조사)	83
<표 VI-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여부 분석(설문조사)	84
<표 VI-5>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분석(설문조사)	86
<표 VI-6> 세금 신고 방법 분석(설문조사)	87
<표 VI-7> 전자신고 주체 분석(설문조사)	89
<표 VI-8> 전자신고 선택 이유(설문조사)	90
<표 VI-9> 1순위 응답 기준 전자신고 선택 이유 분석(설문조사)	90
<표 VI-10> 서면신고 사업체의 서면신고 이유(설문조사)	91
<표 VI-11> 소득세·부가세 신고시 서면신고 선택 이유 분석(설문조사)	91
<표 VI-12> 전자신고 세액공제 인지도 분석(설문조사)	93
<표 VI-13>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 인지도 분석(설문조사)	94
<표 VI-14>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 인지도 분석(설문조사)	95
<표 VI-15> 서면신고 사업체의 향후 전자신고 선택 의향(설문조사)	96
<표 VI-16> 서면신고 사업체의 향후 전자신고 선택 의향 분석(설문조사)	97
<표 VI-17> 세액공제 확대 시 서면신고 사업체의 전자신고 선택 의향(설문조사) ..	97
<표 VI-18> 세액공제 확대 시 서면신고 사업체의 전자신고 선택 의향 분석 (설문조사)	98
<표 VI-19> 세액공제 축소 시 전자신고 사업체의 전자신고 선택 의향(설문조사) ..	99

<표 VI-20> 세액공제 축소 시 전자신고 사업체의 전자신고 선택 의향 분석 (설문조사)	99
<표 VI-21> 세액공제 폐지 시 전자신고 사업체의 전자신고 선택 의향(설문조사) ..	100
<표 VI-22> 세액공제 폐지 시 전자신고 사업체의 전자신고 선택 의향 분석 (설문조사)	100
<표 VI-23> 세액공제 전자신고 활성화 기여도(설문조사)	101
<표 VI-24> 세액공제 전자신고 활성화 기여도 분석(설문조사)	101
<표 VI-25> 전자신고 편리성 공감도(설문조사)	102
<표 VI-26>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 여부(설문조사)	104
<표 VI-27>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자의 전자고지 선택 이유(설문조사)	105
<표 VI-28> 1순위 응답기준 전자고지 선택 이유 분석(설문조사)	105
<표 VI-29> 전자고지 비이용 이유(설문조사)	106
<표 VI-30> 전자고지 비이용 이유 분석(설문조사)	107
<표 VI-31> 전자고지 세액공제 인지도 분석(설문조사)	108
<표 VI-32> 전자고지 세액공제 인식층 분석(설문조사)	109
<표 VI-33> 전자고지 세액공제 금액 인지 분석(설문조사)	110
<표 VI-34> 전자고지 비이용 사업체의 전자고지 선택 의향(설문조사)	111
<표 VI-35> 전자고지 비이용 사업체의 전자고지 선택 의향 분석(설문조사)	112
<표 VI-36> 세액공제 확대 시 전자고지 비이용자의 전자고지 선택 의향 (설문조사)	113
<표 VI-37> 세액공제 확대 시 전자고지 비이용자의 전자고지 선택 의향 분석 (설문조사)	113
<표 VI-38> 세액공제 축소 시 전자고지 이용자의 전자고지 선택 의향(설문조사) ..	114
<표 VI-39> 세액공제 축소 시 전자고지 이용자의 전자고지 선택 의향 분석 (설문조사)	114

그림 목 차

[그림 V-1] 연도별 세목별 전자신고 비율	63
[그림 V-2] 원천세 전자신고 비율 및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이용 비율	69
[그림 V-3] 세목별 전자고지율 변화	75
[그림 VI-1] 최종 표본의 분포(응답비율)	81
[그림 VI-2] 세무대리인 고용 여부(응답비율)	82
[그림 VI-3] 부가가치세 납부자 유형(설문조사)	83
[그림 VI-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여부(설문조사)	84
[그림 VI-5] 종합소득세 신고자 유형(설문조사)	85
[그림 VI-6]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방법별 비율(설문조사)	87
[그림 VI-7] 전자신고를 수행한 주체 비율(설문조사)	88
[그림 VI-8] 전자신고 세액공제 인지 여부(설문조사)	93
[그림 VI-9]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 인지 여부(설문조사)	94
[그림 VI-10]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 인지 여부(설문조사)	95
[그림 VI-11]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 여부(설문조사)	103
[그림 VI-12] 전자고지 세액공제 인지 여부(설문조사)	108
[그림 VI-13] 세목 기준 전자고지 세액공제 인식층 조사(설문조사)	109
[그림 VI-14] 전자고지 세액공제 금액 인지 여부(설문조사)	111

I. 서론



I. 서론

- 본 연구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제도의 필요성 및 개선 가능성을 검토함
 - 전자신고¹⁷⁾ 세액공제와 전자고지¹⁸⁾ 세액공제는 각각 2004년 1월 1일과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¹⁹⁾
 - (전자신고)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는 2만원, 부가가치세는 1만원 세액공제²⁰⁾
 - (전자고지) 납부고지 1건당 1천원 세액공제²¹⁾

- 타당성 분석에서는 국내외 제도 검토 등 정성적 분석과 국세청 자료, 설문 조사 등을 이용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여 정책목적의 적절성, 정부 개입의 근거, 정책대상 및 지원수준의 적절성 등을 평가
 - (정책목적의 적절성) 전자신고·전자고지 조기정착 및 활성화라는 정책목적의 적절한지 평가하기 위하여 과세행정 및 납세협력 비용 측면에서 검토
 - (정부개입의 근거) 세목별 전자신고·전자고지 현황 분석을 통하여 제도 정착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등을 평가
 - (정책대상 및 지원 수준의 적절성) 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활용 사례를 검토하고 현재 세액공제 수준의 적절성을 국세행정 비용 및 다른 제도의 절감액과 비교

- 효과성 분석에서는 제도로 인한 세부담 감소 효과, 도입 목적 달성 여부 및 수혜자들의 행태변화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함

17)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신고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으로 신고하는 것

18) “전자고지”란 납세자에게 고지된 내용을 납세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세정보통신망에 수록하는 것

19)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20) 세액공제 한도는 세무대리인 300만원, 세무·회계법인 750만원

21) 전자고지 세액공제 대상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 제도의 목적 달성 여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세청 자료와 이중차분법 등 준실험적 방법론을 활용하며,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책대상자의 인식 등을 분석함
 - 준실험적 방법론에서 통제군은 정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세목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설문을 통한 분석에서는 제도 폐지 등 가상적인 상황에서 수혜자의 행태변화에 대하여 조사함

- 제Ⅱ장과 제Ⅲ장에서는 제도의 현황과 개요를 살펴보고, 제Ⅳ장에서는 제도의 타당성을 평가하며, 제Ⅴ장과 제Ⅵ장에서는 효과성 분석을 수행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연구를 마무리함

Ⅱ. 제도 현황



II. 제도 현황

1. 전자신고 세액공제 조세지출 적용 실적

- 2022년 전자신고 세액공제 조세지출은 1,557억원인데, 이는 전체 국세감면액 63조 5,484억원의 0.25%, 「조특법」상 조세지출 33조 8,432억원의 0.46%를 차지함
- 전자신고 세액공제 조세지출 규모는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함
 - 조세지출 규모는 2004년에 40.2억원에서 2022년 1,557억원으로 18년 사이에 38.7배 증가함

<표 II -1> 전자신고 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소득세	40	144	153	189	303	406	445	461	424	508
법인세	0.2	1	1	3	5	4	9	10	12	16
부가세	-	-	-	-	-	-	213	236	262	282
양도 소득세	-	-	-	-	-	-	-	-	-	-
계	40.2	145	154	192	308	410	667	707	698	806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소득세	535	611	617	684	766	827	829	847	1,105	
법인세	18	20	23	25	30	30	27	27	28	
부가세	295	327	322	351	376	401	393	399	411	
양도 소득세	-	-	-	-	-	-	-	20	13	
계	848	958	962	1,060	1,172	1,258	1,249	1,293	1,557	

주: 양도소득세의 경우 조세지출예산서 제출 대상은 아니나, 조세지출예산서와 동일한 기준(신고일이 속하는 연도 기준)으로 작성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세목별 조세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세와 부가세가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대부분을 차지함
 - 2022년 소득세 전자신고와 부가세 전자신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1.0%, 26.4%임
 - 법인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은 2022년 28억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 정도에 불과함
 -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세액공제액은 2021년 20억원에서 2023년에는 12억원으로 감소하여 전자신고 전체 세액공제액 중에 1%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21년부터 전자고지에 대한 세액공제가 시행되었는데, 그 규모가 10억원 미만으로 미미함
 -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는 2021년 1.8억원, 2022년 6.7억원, 2023년 8.4억원임

2. 법인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가. 법인세 전자신고 현황

- 법인세 전자신고 비율은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도입되기 전인 2003년에도 92.7%로 이미 높은 수준이었으나 지난 19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100%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하였으며, 전자신고의 대부분은 세무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짐
 - 법인세 전자신고 비율은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도입된 2004년에 전년 대비 4.4%p 증가함
 - 전자신고 비율은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 도입 초기에 97%까지 증가한 후 2008년까지 96%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22년 기준으로 99.6%까지 증가함

<표 II -2> 법인세 전자신고 현황

(단위: 건, %)

연도	총신고건수	전자신고건수	본인	세무대리인	비율
2003	298,570	276,728	-	-	92.7
2004	317,395	308,193	-	-	97.1
2005	336,208	325,705	-	-	96.9
2006	354,836	343,755	-	-	96.9
2007	381,565	366,710	-	-	96.1
2008	401,819	385,860	12,472 (3.2)	373,388 (96.8)	96.0
2009	421,145	404,859	11,985 (3.0)	392,874 (97.0)	96.1
2010	440,088	428,268	13,328 (3.1)	414,940 (96.9)	97.3
2011	465,262	453,410	14,113 (3.1)	439,297 (96.9)	97.5
2012	492,632	483,710	13,927 (2.9)	469,783 (97.1)	98.2
2013	522,898	514,132	14,379 (2.8)	499,753 (97.2)	98.3
2014	562,341	550,813	17,479 (3.2)	533,334 (96.8)	98.0
2015	610,244	601,986	18,578 (3.1)	583,408 (96.9)	98.6
2016	656,196	648,477	21,455 (3.3)	627,022 (96.7)	98.8
2017	697,772	691,431	22,272 (3.2)	669,159 (96.8)	99.0
2018	740,828	735,083	21,800 (3.0)	713,283 (97.0)	99.2
2019	787,788	782,360	23,514 (3.0)	758,846 (97.0)	99.3
2020	849,782	844,885	26,044 (3.1)	818,841 (96.9)	99.4
2021	912,699	908,885	27,051 (3.0)	881,834 (97.0)	99.6
2022	964,947	961,252	31,801 (3.3)	929,451 (96.7)	99.6

주: () 안의 숫자는 전자신고건 중에서 본인과 세무대리인이 수행한 비율을 나타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법인세 전자신고는 2003년 276,728건에서 2022년 961,252건으로 19년간 3.47배 증가하였음
- 전체 법인세 신고에서 전자신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도입된 이후, 2004년 97.1%에서 2022년 99.6%로 18년간 2.5%p 증가하여 100%에 근접함
 - 2018년 시행령 개정과 2019년 법률 개정을 통해 전자신고를 수행하는 대리인에 대한 혜택이 감소하여 개인은 400만원에서 300만원, 법인은 1,0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감소하였지만 전자신고 비율이 99.6%로 증가함
 - 2018년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공제 한도액이 감소하여 개인은 400만원에서 200만원, 법인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면혜택이 축소하였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인은 300만원, 법인은 750만원으로 함
 - 2019년 법률 개정을 통해 연간 공제 한도액을 개인은 300만원, 법인은 750만원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시행령에 관련 내용을 삭제함
 - 2022년 기준으로 전체 법인세 신고 대상 964,947개 법인 중에서 전자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은 3,695개로 전체 신고대상 중 1% 미만임
- 전자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본인이 3% 내외, 세무대리인이 대략 97%로 일정하게 유지됨

나. 법인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현황

1) 법인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는 법인의 수와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16년에는 3,831개의 법인이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2022년에는 4,303개의 법인이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음
 -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 법인은 2016년 503개, 2022년 724개로 2016년 대비 221개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세무법인은 2016년 22개에서 2022년 440개로 20배 증가하였음

-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는 법인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3.7%에서 2022년 27.0%로 큰 폭으로 증가함
-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은 일반법인은 2016년 3,031개에서 2022년 3,116개로 85개(2.8%) 증가하였고, 세무법인은 2016년 275개에서 2022년 23개로 253개 (92.0%) 감소함
- 법인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총액은 2013년에 15.9억원에서 2022년 28.2억원으로 76.9% 증가함
- 전체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중에서 세무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92.6%에서 2016년 96.6%까지 증가하고 2022년까지 96%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 세무법인당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2013년 430만원에서 2022년 약 6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일반 세무법인은 2013년 620만원에서 2022년에는 약 300만원으로 감소함

<표 II -3> 법인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연도	신고 구분	중소기업		일반법인		합계	
		신고법인	금액	신고법인	금액	신고법인	금액
2013	법인	614 (21.8)	25 (1.6)	1,956 (69.5)	94 (5.9)	2,816	1,595
	세무법인	22 (0.8)	95 (6.0)	224 (8.0)	1,381 (86.6)		
2014	법인	576 (16.5)	13 (0.7)	2,672 (76.5)	88 (4.8)	3,493	1,817
	세무법인	24 (0.7)	139 (7.6)	221 (6.3)	1,577 (86.8)		
2015	법인	492 (14.6)	18 (0.9)	2,567 (76.2)	67 (3.4)	3,370	1,985
	세무법인	22 (0.7)	125 (6.3)	289 (8.6)	1,775 (89.4)		
2016	법인	503 (13.1)	13 (0.6)	3,031 (79.1)	65 (2.9)	3,831	2,276
	세무법인	22 (0.6)	150 (6.6)	275 (7.2)	2,048 (90)		
2017	법인	540 (13)	28 (1.1)	3,274 (78.9)	82 (3.3)	4,150	2,516
	세무법인	31 (0.7)	154 (6.1)	305 (7.3)	2,252 (89.5)		

<표 II -3>의 계속

(단위: 개, 백만원)

연도	신고 구분	중소기업		일반법인		합계	
		신고법인	금액	신고법인	금액	신고법인	금액
2018	법인	574 (13)	13 (0.4)	3,465 (78.5)	75 (2.5)	4,412	2,964
	세무법인	302 (6.8)	2,290 (77.3)	71 (1.6)	586 (19.8)		
2019	법인	597 (15.6)	34 (1.1)	2,820 (73.5)	60 (2.0)	3,838	3,001
	세무법인	380 (9.9)	2,720 (90.6)	41 (1.1)	187 (6.2)		
2020	법인	609 (15.2)	13 (0.5)	2,958 (73.9)	64 (2.4)	4,003	2,710
	세무법인	405 (10.1)	2,516 (92.8)	31 (0.8)	117 (4.3)		
2021	법인	670 (16.7)	44 (1.6)	2,896 (72.3)	62 (2.3)	4,005	2,680
	세무법인	412 (10.3)	2,486 (92.8)	27 (0.7)	88 (3.3)		
2022	법인	724 (16.8)	50 (1.8)	3,116 (72.4)	67 (2.4)	4,303	2,821
	세무법인	440 (10.2)	2,636 (93.4)	23 (0.5)	68 (2.4)		

주: () 안의 숫자는 해당 연도의 전체 전자신고 법인 수와 세액공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 법인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 비율

- 본인이 직접 법인세를 전자신고했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80%가 넘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1항 후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1항 3호에 따라 최저한세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됨
 - 본인이 직접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고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은 비율은 2016년 17.9%에서 2018년 20.2%로 증가하였지만,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2년 기준 12.1%까지 떨어짐
 - 전자신고를 직접 한 법인 중에서 80% 이상은 전자신고를 했지만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세액공제 신고 법인이 증가하지만 일반기업은 감소하는 추세임

- 전자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는 중소기업의 수는 2009년 678개에서 2015년 492개로 감소하다가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22년에는 1,164개임

<표 II -4> 법인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비율

(단위: 건, %)

연도	본인 전자신고건수 (A)	전자신고 세액공제 신고 법인		비율 [(B+C)/A]
		중소기업 (B)	일반기업 (C)	
2016	21,455	525	3,306	17.9
2017	22,272	571	3,579	18.6
2018	21,800	876	3,536	20.2
2019	23,514	977	2,861	16.3
2020	26,044	1,014	2,989	15.4
2021	27,051	1,082	2,923	14.8
2022	31,801	1,164	3,139	12.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3. 종합소득세

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현황

- 2003년 이후 종합소득세 전자신고건수와 전자신고의 비율이 크게 증가함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건수는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도입되기 전인 2003년 1,143,126건에서 2022년 11,989,000건으로 10.48배 증가하였음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비율은 2003년 43.5%에 불과하였지만,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도입된 2004년에는 74.3%로 1년 만에 30.8%p가 증가하였으며, 이후 2022년까지 18년간 25.2%p가 증가하여 99.5%에 이룸
 - 전자신고 중 본인에 의한 비율은 2005년 42.8%에서 2022년 68.7%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세무대리인에 의한 비율은 2005년 57.2%에서 2022년 31.3%로 감소하였음

<표 II -5>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현황

(단위: 건, %)

연도	총신고건수	전자신고건수	본인	세무대리인	비율
2003	2,625,943	1,143,126	-	-	43.5
2004	2,779,605	2,065,070	-	-	74.3
2005	2,775,022	2,252,413	-	-	81.2
2006	3,428,729	2,746,022	-	-	80.1
2007	4,045,270	3,266,119	-	-	80.7
2008	4,888,581	3,909,161	1,672,842 (42.8)	2,236,319 (57.2)	80.0
2009	4,516,871	3,767,046	1,548,149 (41.1)	2,218,897 (58.9)	83.4
2010	4,703,854	4,108,422	1,751,118 (42.6)	2,357,304 (57.4)	87.3
2011	5,005,424	4,396,816	1,896,374 (43.1)	2,500,442 (56.9)	87.8
2012	5,289,054	4,807,370	2,168,097 (45.1)	2,639,273 (54.9)	90.9
2013	5,447,494	4,989,533	2,232,859 (44.8)	2,756,674 (55.2)	91.6
2014	5,516,499	5,100,686	2,321,259 (45.5)	2,779,427 (54.5)	92.5
2015	5,954,281	5,417,598	2,436,161 (45.0)	2,981,437 (55.0)	91.0
2016	6,376,702	6,073,251	3,039,467 (50.0)	3,033,784 (50.0)	95.2
2017	6,896,721	6,655,408	3,447,870 (51.8)	3,207,538 (48.2)	96.5
2018	7,445,140	7,242,204	3,920,677 (54.1)	3,321,527 (54.1)	97.3
2019	8,094,645	7,959,625	4,469,544 (56.2)	3,490,081 (43.8)	98.3
2020	8,729,744	8,599,706	4,906,257 (57.1)	3,693,449 (42.9)	98.5
2021	10,857,664	10,786,729	7,031,257 (65.2)	3,755,472 (34.8)	99.3
2022	12,043,461	11,989,000	8,239,096 (68.7)	3,749,904 (31.3)	99.5

주: () 안의 숫자는 해당 연도 전자신고 건 중에서 본인과 세무대리인이 수행한 비율을 나타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나.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현황

1)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인원

- 최근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는 인원이 급증하였는데, 특히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구간에서 크게 증가함
 - 2016년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는 인원은 2,488,619명, 2022년 5,824,542명으로 2016년 대비 약 2.3배 증가하였음
 - 종합소득금액 0~1천만원 구간은 2016년 1,428,228명에서 2022년 2,454,067명으로 1.7배 증가하였고 1천만~2천만원 구간은 2016년 528,135명에서 2022년 1,485,048명으로 2.8배 증가하였음
 - 종합소득금액 1천만원 이하의 비중은 2016년 58.9%에서 2022년 42.1%로 16.8%p 감소하였고, 2천만원 이하의 비중은 2016년 80.1%에서 2022년 68.4%로 11.7%p 감소하였음
 - 종합소득금액 2천만~4천만원 구간은 2016년에 291,898명에서 2022년에는 1,137,831명으로 3.9배 증가하여 큰 증가 폭을 보였고, 비율도 2016년 11.7%에서 2022년 19.5%로 증가함
 - 종합소득금액 2억원 이상의 구간은 2016년 7472명에서 2022년 30,556명으로 증가하였지만, 차지하는 비율은 0.5%로 일정함

<표 II -6>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인원 현황

(단위: 명, %)

종합소득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2,488,619	2,867,196	3,211,218	3,545,176	3,610,673	4,921,908	5,824,542
0원 이하	37,329 (1.5)	39,066 (1.4)	56,759 (1.8)	40,068 (1.1)	44,123 (1.2)	45,981 (0.9)	44,554 (0.8)
0~1천만원 이하	1,428,228 (57.4)	1,591,732 (55.5)	1,730,260 (53.9)	1,902,102 (53.7)	1,911,180 (52.9)	2,249,700 (45.7)	2,454,067 (42.1)
1천만~2천만원 이하	528,135 (21.2)	628,880 (21.9)	734,277 (22.9)	810,165 (22.9)	813,457 (22.5)	1,246,432 (25.3)	1,485,048 (25.5)
2천만~4천만원 이하	291,898 (11.7)	360,021 (12.6)	423,389 (13.2)	486,171 (13.7)	511,454 (14.2)	846,216 (17.2)	1,137,831 (19.5)
4천만~6천만원 이하	86,327 (3.5)	106,584 (3.7)	116,086 (3.6)	132,731 (3.7)	138,246 (3.8)	240,355 (4.9)	322,245 (5.5)

<표 II -6>의 계속

(단위: 명, %)

종합소득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6천만~8천만원 이하	47,209 (1.9)	57,138 (2.0)	60,967 (1.9)	68,784 (1.9)	71,583 (2.0)	115,926 (2.4)	152,327 (2.6)
8천만~1억원 이하	28,956 (1.2)	33,787 (1.2)	35,846 (1.1)	40,516 (1.1)	44,969 (1.2)	65,107 (1.3)	82,321 (1.4)
1억~2억원 이하	33,065 (1.3)	40,558 (1.4)	42,888 (1.3)	51,733 (1.5)	59,669 (1.7)	89,193 (1.8)	115,593 (2.0)
2억~3억원 이하	4,024 (0.2)	5,229 (0.2)	5,943 (0.2)	7,344 (0.2)	9,042 (0.3)	13,500 (0.3)	17,910 (0.3)
3억~5억원 이하	1,937 (0.1)	2,308 (0.1)	2,727 (0.1)	3,218 (0.1)	4,024 (0.1)	5,810 (0.1)	7,981 (0.1)
5억원 초과	1,511 (0.1)	1,893 (0.1)	2,076 (0.1)	2,344 (0.1)	2,926 (0.1)	3,688 (0.1)	4,665 (0.1)

주: () 안은 종합소득 구간별 비율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은 2016~2022년 기간에 약 2배 증가함. 특히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4천만원 구간에서 크게 증가함
 -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은 2016년에 68,394백만원에서 2022년에는 128,154백만원으로 증가함
 - 2018년 이후 세액공제 한도액이 축소되었지만 2018년 77,046백만원에서 2019년 82,941백만원, 2022년 128,154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종합소득금액 0~1천만원 구간은 2016년 28,593백만원에서 2022년 48,184백만원으로 1.69배 증가하였고 1천만~2천만원 구간은 2016년 10,735백만원에서 2022년 27,954백만원으로 2.6배 증가하였음
 - 종합소득금액 1천만원 이하의 비중은 2016년 42.9%에서 2022년 38.3%로 4.6%p 감소하였고, 2천만원 이하의 비중은 2016년 58.6%에서 2022년 60.1%로 증가하였음
 -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의 60%를 차지함

- 종합소득금액 2천만~4천만원 구간은 2016년 7,429백만원에서 2022년 22,615백만원으로 약 3배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고, 비율도 2016년 10.9%에서 2022년 17.6%로 증가함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상의 구간은 2016년 9,213백만원에서 2022년 11,564백만원으로 증가하였지만,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에 13.5%에서 2022년에는 9.0%로 감소함

<표 II -7>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종합소득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68,394	76,597	77,046	82,941	84,656	110,455	128,154
0원 이하	758 (1.1)	783 (1.0)	1,138 (1.5)	808 (1.0)	885 (1.0)	926 (0.8)	900 (0.7)
0~1천만원 이하	28,593 (41.8)	31,856 (41.6)	33,909 (44.0)	37,327 (45.0)	37,418 (44.2)	44,011 (39.8)	48,184 (37.6)
1천만~2천만원 이하	10,735 (15.7)	12,745 (16.6)	13,805 (17.9)	15,179 (18.3)	15,239 (18.0)	23,455 (21.2)	27,954 (21.8)
2천만~4천만원 이하	7,429 (10.9)	8,763 (11.4)	9,021 (11.7)	9,997 (12.1)	10,667 (12.6)	17,128 (15.5)	22,615 (17.6)
4천만~6천만원 이하	4,280 (6.3)	4,679 (6.1)	4,081 (5.3)	4,342 (5.2)	4,487 (5.3)	6,594 (6.0)	8,125 (6.3)
6천만~8천만원 이하	3,945 (5.8)	4,046 (5.3)	3,461 (4.5)	3,267 (3.9)	3,509 (4.1)	4,231 (3.8)	5,003 (3.9)
8천만~1억원 이하	3,441 (5.0)	3,849 (5.0)	3,104 (4.0)	3,224 (3.9)	3,348 (4.0)	3,688 (3.3)	3,809 (3.0)
1억~2억원 이하	7,185 (10.5)	7,608 (9.9)	6,556 (8.5)	6,623 (8.0)	6,686 (7.9)	7,576 (6.9)	8,204 (6.4)
2억~3억원 이하	1,459 (2.1)	1,611 (2.1)	1,350 (1.8)	1,475 (1.8)	1,669 (2.0)	1,892 (1.7)	2,180 (1.7)
3억~5억원 이하	472 (0.7)	544 (0.7)	516 (0.7)	556 (0.7)	591 (0.7)	759 (0.7)	920 (0.7)
5억원 초과	97 (0.1)	113 (0.1)	105 (0.1)	143 (0.2)	157 (0.2)	195 (0.2)	260 (0.2)

주: () 안은 종합소득 구간별 비율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3) 소득구간별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비율

- 종합소득이 0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높을수록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1항 후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2항 3호에 따라 최저한세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됨
 - 종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는 비율은 소득금액 0~1천만원 이하의 구간에서 2021년 64.8%, 2022년 68.0%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 소득이 많을수록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임

〈표 II -8〉 소득구간별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신고 비율

(단위: 명, %)

종합소득	2021년			2022년		
	종합소득 신고인원	전자신고 세액공제 신고인원	비율	종합소득 신고인원	전자신고 세액공제 신고인원	비율
합계	9,339,463	4,921,908	52.7	10,275,113	5,824,542	56.7
0원 이하	326,529	45,981	14.1	326,867	44,554	13.6
0~1천만원 이하	3,472,640	2,249,700	64.8	3,608,841	2,454,067	68.0
1천만~2천만원 이하	2,163,796	1,246,432	57.6	2,401,225	1,485,048	61.8
2천만~4천만원 이하	1,759,531	846,216	48.1	2,085,200	1,137,831	54.6
4천만~6천만원 이하	628,531	240,355	38.2	727,760	322,245	44.3
6천만~8천만원 이하	320,657	115,926	36.2	369,687	152,327	41.2
8천만~1억원 이하	191,624	65,107	34.0	215,796	82,321	38.1
1억~2억원 이하	314,504	89,193	28.4	356,363	115,593	32.4
2억~3억원 이하	76,185	13,500	17.7	85,491	17,910	20.9
3억~5억원 이하	47,418	5,810	12.3	54,504	7,981	14.6
5억~10억원 이하	25,670	2,494	9.7	29,800	3,198	10.7
10억원 초과	12,378	1,194	9.6	13,579	1,467	10.8

주: 비율은 소득구간별 종합소득 신고인원 대비 전자신고 세액공제 신고인원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 전자신고건수 대비 전자신고 세액공제 비율

-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했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비율은 30% 수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1항 후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1항 3호에 따라 최저한세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됨
 - 종합소득세를 직접 전자신고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
 - 과거에는 2014년 91.3%, 2015년 88.6% 등 90% 내외였지만, 최근에는 세액공제를 받는 비율이 감소하여 2021년 70.0% 2022년에는 70.7%로 집계됨

<표 II -9>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비율

(단위: 건, %)

연도	본인 전자신고건수 (A)	전자신고 세액공제 신고 개인 (B)	비율 (B/A)
2019	4,469,544	3,545,176	79.3
2020	4,906,257	3,610,673	73.6
2021	7,031,257	4,921,908	70.0
2022	8,239,096	5,824,542	70.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다. 종합소득세 전자고지 세액공제 현황

- 2021년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시행되었으며, 종합소득세 전체 고지 건수 중 전자고지 건수의 비중은 2023년 기준 11.6%
 - 2023년 전체 고지 건수 2,338,387건 중 전자고지 건수는 271,034건으로 전자고지 비율은 11.6%
 - 전자고지 세액공제 시행 전인 2020년 전체 고지 건수 1,451,991건 중에 전자고지 건수는 83,659건으로 전자고지 비율은 5.8%
 - 종합소득세 전자고지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표 II -10> 종합소득세 전자고지 세액공제 현황

(단위: 건, %, 천원)

연도	전체 고지 건수 (A)	전자고지 건수 (B)	비율 (B/A)	공제세액
2020	1,451,991	83,659	5.8	-
2021	1,749,788	105,853	6.0	14,149
2022	3,329,369	292,653	8.8	218,873
2023	2,338,387	271,034	11.6	192,829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4. 부가가치세

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현황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건수 및 총신고건수에서 전자신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함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비율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도입되기 전인 2003년 33.8%에 불과했지만,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도입된 2004년에는 60.3%로 증가하였고 18년이 지난 2022년 97.1%까지 증가함
 - 총신고건수는 2003년 9,318,429건에서 2015년 11,246,543건, 2022년 15,091,828건으로 162% 증가
 - 전자신고건수는 2003년 3,150,491건에서 2015년 10,120,733건, 2022년 14,650,782건으로 465% 증가하였음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비율은 2004년 60.3%에서 2015년 90%에 도달한 후 매년 증가하여 2022년 기준 97.1%를 기록함
 - 2006년 78.9%이던 부가세 전자신고비율은 2009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매년 평균적으로 증가비율이 1.7%p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II -11>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현황

(단위: 건, %)

연도	1기		2기		합계		
	총신고	전자신고	총신고	전자신고	총신고	전자신고	비율
2003					9,318,429	3,150,491	33.8
2004					9,296,963	5,606,540	60.3
2005	4,727,892	3,510,873	4,820,201	3,687,380	9,548,093	7,198,253	75.4
2006	4,805,733	3,808,860	4,932,146	3,875,870	9,737,879	7,684,730	78.9
2007	5,187,857	3,910,399	5,343,931	3,999,978	10,531,788	7,910,377	75.1
2008	5,626,281	4,169,025	5,746,284	4,260,068	11,372,565	8,429,093	74.1
2009	5,896,248	4,396,963	6,033,655	4,498,765	11,929,903	8,895,728	74.6
2010	6,077,929	4,799,705	6,085,444	4,813,527	12,163,373	9,613,232	79.0
2011	6,288,738	4,923,791	6,258,571	5,148,884	12,547,309	10,072,675	80.3
2012	5,938,724	4,881,604	5,934,064	4,937,126	11,872,788	9,818,730	82.7
2013	4,463,376	3,982,150	6,200,058	5,067,811	10,663,434	9,049,961	84.9
2014	4,686,307	4,129,378	6,090,277	5,267,264	10,773,884	9,396,642	87.2
2015	4,722,267	4,407,338	6,524,276	5,713,395	11,246,543	10,120,733	90.0
2016	5,065,613	4,778,786	6,849,721	6,141,110	11,915,334	10,919,896	91.6
2017	5,397,246	5,115,659	7,156,837	6,539,779	12,554,083	11,655,438	92.8
2018	5,684,684	5,453,405	7,388,042	6,855,933	13,072,726	12,309,338	94.2
2019	5,951,599	5,763,851	7,678,023	7,225,953	13,629,622	12,989,804	95.3
2020	6,262,058	6,080,776	8,164,572	7,607,587	14,426,630	13,688,363	94.9
2021	6,296,864	6,144,276	8,152,067	7,743,249	14,448,931	13,887,525	96.1
2022	6,468,623	6,350,691	8,623,205	8,300,091	15,091,828	14,650,782	97.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나.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현황

1)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건수와 세액공제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건수는 2013년 914,014건에서 2015년 1,522,175건으로 증가하였음
 - 법인사업자는 2013년 90,601건에서 2022년 113,301건으로 증가하고, 일반사업

자는 2013년 823,413건에서 2022년 1,408,874건으로 증가함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은 2013년 280.7억원에서 2022년 420.5억원으로 증가하였음
- 법인사업자는 2013년 38.9억원에서 2022년 53.8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일반사업자는 2013년 241.8억원에서 2022년 366.7억원으로 증가하였음

<표 II -12>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 전자신고 세액공제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	구분	제1기		제2기		합계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2013	법인사업자	89,677	2073	90,601	1814	90,601	3,887
	일반사업자	801,854	12,495	823,413	11,689	823,413	24,184
	합계	891,531	14,568	914,014	13,503	914,014	28,071
2014	법인사업자	88,129	2201	89,227	1844	89,227	4,045
	일반사업자	836,760	13,261	871,098	12,175	871,098	25,436
	합계	924,889	15,462	960,325	14,019	960,325	29,481
2015	법인사업자	69,201	3105	89,318	1918	89,318	5,023
	일반사업자	567,535	10,744	859,123	12,294	859,123	23,038
	합계	636,736	13,849	948,441	14,212	948,441	28,061
2016	법인사업자	91,518	2,569	93,117	2,187	93,117	4,756
	일반사업자	941,838	14,647	986,499	13,664	986,499	28,311
	합계	1,033,356	17,216	1,079,616	15,851	1,079,616	33,067
2017	법인사업자	95,516	2,805	97,070	2,276	97,070	5,081
	일반사업자	1,010,040	15,498	1,084,426	14,754	1,084,426	30,252
	합계	1,105,556	18,303	1,181,496	17,030	1,181,496	35,333
2018	법인사업자	97,822	2,984	99,296	2,409	99,296	5,393
	일반사업자	1,093,187	16,586	1,172,506	15,558	1,172,506	32,144
	합계	1,191,009	19,570	1,271,802	17,967	1,271,802	37,537
2019	법인사업자	101,624	2,684	102,942	2,323	102,942	5,007
	일반사업자	1,172,939	16,476	1,239,257	15,988	1,239,257	32,464
	합계	1,274,563	19,160	1,342,199	18,311	1,342,199	37,471
2020	법인사업자	105,591	2,810	104,798	2,247	104,798	5,057
	일반사업자	1,243,167	17,467	1,271,360	16,084	1,271,360	33,551
	합계	1,348,758	20,277	1,376,158	18,331	1,376,158	38,608

<표 II -12>의 계속

(단위: 건, 백만원)

연도	구분	제1기		제2기		합계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2021	법인사업자	107,650	2,837	109,923	2,300	109,923	5,137
	일반사업자	1,301,438	18,258	1,281,253	16,118	1,281,253	34,377
	합계	1,409,088	21,095	1,391,176	18,418	1,391,176	39,514
2022	법인사업자	111,878	2,944	113,301	2,438	113,301	5,379
	일반사업자	1,349,783	19,084	1,408,874	17,583	1,408,874	36,669
	합계	1,461,661	22,028	1,522,175	20,020	1,522,175	42,04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 간이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자의 경우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증감이 반복되고 있지만, 2014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전자신고 신고건수, 전자신고율, 공제세액이 증가함
 - 전자신고 건수는 2014년 60,330건에서 2022년 142,031건으로, 전자신고 비율은 7.1%에서 8.6%로, 공제세액은 586백만원에서 1,381백만원으로 상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2항 후단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공제세액이 납부 세액보다 큰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함

<표 II -13> 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자 전자신고 세액공제 현황

(단위: 명, 건, %, 백만원)

연도	총신고인원	전자신고 세액공제 신고건수	비율	공제세액
2014	1,672,075	60,330	3.6	586
2015	1,660,168	106,664	6.4	807
2016	1,652,359	130,084	7.9	940
2017	1,646,647	141,642	8.6	1,042
2018	1,563,140	105,734	6.8	751
2019	1,603,298	118,120	7.4	894
2020	1,684,147	71,230	4.2	652
2021	1,877,513	81,455	4.3	785
2022	2,000,004	142,031	7.1	1,381

주: 비율은 총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대비 전자신고 건수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다. 부가가치세 전자고지 세액공제 현황

- 부가가치세 전체 고지 건수 중 전자고지 건수의 비중은 2023년 기준 10.8%
 - 전자고지 세액공제 시행 전인 2020년 전체 고지 건수 4,501,126건 중에 전자고지 건수는 251,170건으로 전자고지의 비율은 5.6%
 - 2023년에 전체 고지 건수 6,589,070건 중 전자고지 건수는 709,318건으로 전자고지의 비율은 10.8%를 차지
 - 부가가치세 전자고지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표 II -14〉 부가가치세 전자고지 세액공제 현황

(단위: 건, %, 천원)

연도	전체 고지 건수	전자고지 건수	비율	공제세액
2020	4,501,126	251,170	5.6	-
2021	3,663,430	231,898	6.3	75,526
2022	4,819,949	400,017	8.3	283,915
2023	6,589,070	709,318	10.8	548,252

주: 1. 비율은 전체 부가가치세 고지 건수 대비 전자고지 건수의 비율을 의미함

2. 전자고지 세액공제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5. 전자고지

- 전자고지 세액공제 조세지출 규모는 2023년 기준 8.4억원임
 - 2023년 조세지출 규모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가세 5.5억원, 종합소득세 1.9억원, 종합부동산세 0.9억원, 상속 및 증여세 0.1억원임
 - 2021년 조세지출 규모는 1.8억원으로 다른 연도에 비하여 크게 작은데, 이는 제도가 동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전자고지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II -15〉 전자고지 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종합소득세	-	0.14	2.19	1.93
부가세	-	0.76	2.84	5.48
상속세	-	0.01	0.02	0.04
증여세	-	0.02	0.03	0.05
종합부동산세	-	0.92	1.64	0.88
계	-	1.84	6.72	8.37

주: 전자고지 세액공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2023년 기준 전자고지 비율은 세목에 따라 11~16% 수준으로 전자고지 세액공제 도입 직전 연도인 2020년의 5~7% 수준에서 두 배 정도 증가함
 - 2023년 전자고지율을 세목별로 비교해보면, 종합부동산세의 전자고지율이 15.6%로 가장 높고, 부가가치세의 전자고지율이 10.8%로 가장 낮음

〈표 II -16〉 세목별 전자고지율

구분	2020	2021	2022	2023
종합소득세	5.8	6.0	8.8	11.6
부가세	5.6	6.3	8.3	10.8
상속세	5.0	6.2	8.5	11.1
증여세	5.6	6.3	8.1	11.2
종합부동산세	7.0	9.1	12.2	15.6
계	5.5	6.3	8.5	10.6

주: 전자고지 세액공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Ⅲ. 제도 개요



Ⅲ. 제도 개요

1. 제도 목적

- 전자신고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전자신고를 하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세액공제를 제공
 - 2002년 홈택스 서비스 개통으로 전자세정 인프라 구축
 - 2003년 12월 30일 「조특법」 개정 시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제104조의8)가 신설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

- 전자고지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시행됨
 -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으며,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국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전자신고제도 및 전자고지제도 활성화로 인하여 국세행정비용 및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2. 정책대상자

- 전자신고를 하는 납세자[일반과세자(개인·법인), 간이과세자]
 - (대상 세목) 소득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
 -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
 -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 및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

-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신청한 납세자
 - (대상 세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월, 7월, 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

3. 수혜내용

가. 전자신고를 하는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 납세자의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2만원 공제
 -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
 -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함²²⁾
-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및 동법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 납부세액에서 1만원 공제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
 -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²³⁾

나.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

-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²⁴⁾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22) 「조특법시행령」 제104조의5 제1항 및 제2항

23) 「조특법시행령」 제104조의5 제3항 및 제4항

24)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을 포함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

○ 해당 세무사의 소득세²⁵⁾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납세자 1인당 2만원 공제

□ (부가가치세)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 해당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납세자 1인당 1만원 공제

○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한도액은 다음과 같음²⁶⁾

- 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의 300만원 한도
-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경우는 750만원 한도

다. 전자고지 신청에 대한 세액공제

□ 납세자가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 송달을 신청한 경우

○ (공제금액) 납부고지서 1건당 1,000원

- 단, 고지금액 최저한도(1만원)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1천원을 차감한 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원으로 고지

* (예시) 납부세액이 10,500원이면 500원 공제되고 10,000원이 고지

4. 제도 연혁

□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의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음

개정일	내용
2003년 12월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신설(2004. 1. 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및 법인세: 1인당 2만원 * 부가가치세(확정신고기간당): 1인당 1만원 -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자 1인당 1만원(한도 연 100만원)

25) 사업소득 소득세만 해당

26) 「조특법시행령」 제104조의5 제5항

개정일	내용															
2005년 2월 1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법인에 대한 한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법인과 1인 세무대리인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세무법인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세무법인의 사원 수(세무사)에 비례하도록 조정(사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 															
2005년 12월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대리인에 회계법인 추가 및 공제한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대상인 세무대리인의 범위에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을 포함 -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의 공제한도를 사원 수와 무관하게 300만원으로 조정 															
2008년 2월 2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대리인 공제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신고의 경우 종전의 납세자 1인당 1만원(한도액 100만원,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경우 300만원)에서 납세자 1인당 2만원(한도액 300만원,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경우 500만원)으로 확대 															
2009년 2월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대리인 공제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신고 시 세액공제액을 개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와 동일한 수준인 1인당 4만원이 되도록 인상하고 연간 한도액도 300만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800만원)으로 확대 															
2012년 2월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대리인 공제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의 한도를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는 400만원,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은 1,000만원으로 확대 															
2018년 2월 1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대리인 공제한도 축소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구 분</th> <th>금 액</th> </tr> </thead> <tbody> <tr> <td>세무대리인</td> <td>400만원</td> </tr> <tr> <td>세무대리법인</td> <td>1,000만원</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구 분</th> <th>2019~2020년</th> <th>2021년 이후</th> </tr> </thead> <tbody> <tr> <td>세무대리인</td> <td>30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세무대리법인</td> <td>75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금 액	세무대리인	400만원	세무대리법인	1,000만원	구 분	2019~2020년	2021년 이후	세무대리인	300만원	200만원	세무대리법인	750만원	500만원
구 분	금 액															
세무대리인	400만원															
세무대리법인	1,000만원															
구 분	2019~2020년	2021년 이후														
세무대리인	300만원	200만원														
세무대리법인	750만원	500만원														
2019년 2월 1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소득세 납세자의 공제액 축소 및 공제한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액) 건당 1만원 - (공제한도) 추가납부·환급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액 = Min(1만원, 추가납부·환급세액) 															
2019년 12월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대리인 공제한도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대리인 공제 한도: 세무사 등 300만원, 세무법인 등 750만원 															
2020년 12월 2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고지 신청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신설(2021년 7월 1일 이후 최초 전자송달하는 분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고지서 1건당 1천원 공제 															
2021년 2월 1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추가(건당 2만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IV. 타당성 분석



IV. 타당성 분석

1. 정책목적의 적절성

-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목적은 전자신고·전자고지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유도
- 정책의 목적이 명확하고 측정 가능함
 - 전자신고율(전체 신고 중에 전자신고 비율)과 전자고지율(전체 고지 중에 전자고지의 비율)을 통해 정책목적의 달성도 측정 가능
- 전자신고·전자고지 활성화는 관련된 행정비용 및 협력비용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되기에 바람직한 정책목적으로 판단
 - (행정비용 절감) 국세청은 관련 행정업무가 전산으로 처리되면서 행정의 효율성 및 신속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 2021년 국세 334조 4,714억원을 걷는 데 쓰인 징세비(인건비 등)가 1조 8,600억 원으로 집계
 - 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2019년 0.60원, 2020년 0.63원, 2021년 0.54원 수준
 - (협력비용 절감) 납세자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신고 및 고지 내용 확인 등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음
 - 납세협력비용은 증빙의 수취·보관,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비용을 의미
 - (파급효과) 전반적인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정확한 과세자료 수집과 처리를 통한 납세자 간 형평성 도모, 이를 통한 납세자 신뢰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전자신고·전자고지 활성화는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 등 디지털 국세행정을 위한 다른 정책들과 일관된 목표로 판단

-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세무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신고서 기재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를 인터넷(홈택스), 모바일(손택스 앱) 등을 통해 제공
 - (미리채움 서비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수집한 수입금액, 경비율, 기납부세액 등 신고항목을 미리 채워주고 납세자가 추가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
 - (모두채움 서비스) 신고서의 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항목 등 모든 항목의 관련 정보를 채워주고, 간편신고 대상 납세자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신고서 제출 버튼만 누르면 완료되는 서비스를 제공

2. 정부개입의 근거

- 조세지출의 필요성은 현재 전자신고율 및 전자고지율이 바람직한 수준보다 낮아 개선의 여지가 있을 때 인정될 수 있음
 - 모든 개인의 이질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전자신고율 및 전자고지율 추정은 어렵기 때문에, 전자신고율 및 전자고지율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것으로 가정
 - 고령자, 소상공인 등 디지털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진 납세자의 경우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 시 납세협력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으며 그 증가분이 세무행정 비용 절감분보다 클 수 있음
- 전자신고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는 상당 부분 달성된 것으로 판단됨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율은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도입 직전 연도인 2003년에 43.5%, 92.7%, 33.8%였으며, 2022년에는 99.5%, 99.6%, 97.1% 수준
 - 최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율은 세액공제 적용 직전 연도인 2020년에 31.7%에서 2022년에 48.6%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다른 세목에 비하여 낮은 수준

<표 IV-1> 세목별 전자신고율

(단위: %)

연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2003	33.8	43.5	92.7	-
2004	60.3	74.3	97.1	-
2005	75.4	81.2	96.9	-
2006	78.9	80.1	96.9	-
2007	75.1	80.7	96.1	-
2008	74.1	80.0	96.0	-
2009	74.6	83.4	96.1	0.1
2010	79.0	87.3	97.3	3.8
2011	80.3	87.8	97.5	3.7
2012	82.7	90.9	98.2	4.3
2013	84.9	91.6	98.3	4.2
2014	87.2	92.5	98.0	4.2
2015	90.0	91.0	98.6	7.5
2016	91.6	95.2	98.8	11.2
2017	92.8	96.5	99.0	14.5
2018	94.2	97.3	99.2	18.1
2019	95.3	98.3	99.3	22.4
2020	94.9	98.5	99.4	31.7
2021	96.1	99.3	99.6	42.4
2022	97.1	99.5	99.6	48.6

주: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세통계연보 작성 기준(과세기간 기준)이 아닌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기준(신고일이 속하는 연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및 국세청 내부자료

□ 전자고지의 경우 세액공제 제도 도입 이후 제도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나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전자고지율은 전자고지 세액공제의 도입 직전 연도인 2020년에 5.5%, 5.8%, 5.6%, 5.0%, 5.6%, 7.0%였으며, 2023년에는 10.6%, 11.6%, 10.8%, 11.1%, 11.2%, 15.6% 수준

□ 한편, 한시적으로 전자신고에 대한 지원제도를 운영한 영국과 일본에서는 전자신고 제도 정착 등을 근거로 지원제도를 폐지함(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영국은 2004/2005 과세연도부터 2008/2009 과세연도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전자신고하는 50인 이하의 사업장에 현금보조금을 지급함
 - 제도 도입 이후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함
 - 2004/2005~2005/2006 과세연도: 사업자당 250파운드
 - 2006/2007 과세연도: 사업자당 150파운드
 - 2007/2008 과세연도: 사업자당 100파운드
 - 2008/2009 과세연도: 사업자당 50파운드
 - 2010년 전자신고 정착을 근거로 현금보조금 제도는 폐지됨
 - 소득세 전자신고율이 2003년 13%에서 2010년 94%로 증가함

- 일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개인소득세에 대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운영함
 -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1년에 1회 5천엔을 공제하였으며,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4천엔과 3천엔을 공제함
 - 2012년 소득세 전자신고율이 크게 증가한 것 등을 고려하여 세액공제 제도는 폐지됨
 - 일본의 소득세 전자신고율은 제도를 도입한 2007년에 18.4%에서 제도를 폐지한 2012년에는 50.4%까지 증가함

- 2021년 기준 해외 주요국의 전자신고율 평균은 소득세(50개국 평균) 87.2%, 법인세(52개국 평균) 94.9%, 부가가치세(46개국 평균) 97.5%임
 - OECD에서 발간하는 *Tax Administration 2023*의 Table 4.1.에 제공된 수치로 자료가 이용 가능한 국가의 평균치임(OECD, 2023)
 - 우리나라의 전자신고율은 주요국 평균에 비하여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임

- 전자고지 세액공지의 경우 유사한 해외 사례를 발견하지 못함

3. 지원수준의 적절성

- 본 절에서는 현재 세액공제 금액을 국세행정 비용 절감액 및 유사 제도의 지원 수준과 비교함

-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에 따른 국세행정 비용 절감액은 적정 지원수준의 상한선으로 간주할 수 있음
 -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행정비용 절감액 이상의 세액공제를 제공할 필요는 없음
 - 자료의 한계로 서면신고·서면고지 비용을 전자신고·전자고지의 행정비용 절감액으로 가정함
 - 유사 제도의 지원수준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유사 제도의 절감액을 해당 제도 및 본 세액공제의 적정 지원수준으로 보기 어려움
- 적정 세액공제 수준의 중요한 결정요인은 제도로 인한 납세자의 행태변화
- 만약 본 세액공제의 전자신고·전자고지 유도 효과가 전혀 없다면 적정 세액공제 수준은 0원임
 - 예컨대 전자신고 세액공제와 무관하게 100%에 가까운 전자신고율이 유지될 수 있다면 적정 세액공제 금액은 0원이 될 수 있음
 - 효과성 분석에서 제도 폐지 시 서면신고 전환 등 행태변화 가능성을 분석함
 - 전자신고의 경우 미리채움 서비스, 회계 ERP 등 관련 인프라 확대를 고려하면 행태변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가. 전자신고

- 전자신고하는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는 2만원, 부가가치세는 1만원 세액공제
- 세액공제 한도는 세무대리인 300만원, 세무·회계법인 750만원
- 국세청의 서면신고 과세자료 등 입력비용은 건당 5,613원²⁷⁾
- 건당 서면신고서 전자자료 변환비용 = 서면신고 및 과세자료 등 입력비용 예산 ÷ 서면신고 건수
- 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의 경우 종합소득 및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2천원 세액공제

27) 2022년 기준 국세청 내부 자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3(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1년 12월 31일 신설됨
 - 납세자가 직접 「지방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해당 납부세액에서 2천원²⁸⁾을 공제

나. 전자고지

- 전자고지 신청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고지 1건당 1천원 세액공제
 - 전자고지 세액공제 대상 세목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 국세청의 서면고지 비용은 건당 2,466원²⁹⁾
 - 건당 서면고지 비용 = 등기우편 및 일반우편 발송 비용 ÷ 발송건수
- 국민연금의 경우 이메일 고지를 신청하면 전자우편고지 적용일부터 200원의 감액혜택을 제공함³⁰⁾
 -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감액혜택이 없음
 - 고용·산재보험은 자동이체 시 당월 보험료부터 250원의 감액혜택을 제공함
- 서울시에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해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함
 - 또한 상하수도 요금의 전자송달 혜택은 건당 수도요금의 1%(200~1,000원)

4. 제도 간 중복 여부

- 본 제도와 같이 ‘전자신고·전자고지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유도’라는 목적을 가진 예산 사업은 없음

28)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천원 중 적은 금액

29) 2023년 기준 국세청 내부 자료

30) 독촉고지서를 제외한 정기고지서만 해당

- 단, 국세청의 전자세정 관련 사업은 전자신고·전자고지 제도의 활성화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 간소화 등 전자세정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확대는 전자신고와 전자고지 활성화의 필수 요건
 - 특히, 전자세정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영세납세자 및 고령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은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 제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국세청은 2022년부터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전담팀’을 구성하여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안내 확대, 부가가치세 대화형 신고 확대,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시행 등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세금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음
 - (종합소득세) 국세청은 신고서 항목을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가 확인만 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안내를 영세사업자 및 연금·기타 소득자 등에게도 제공
 -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납세자는 자동 응답 시스템(ARS)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2023년부터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화형 방식의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
 - 세금비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 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 작성되는 서비스
 - 2023년 1월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제공한 이래, 7월에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로 확대하였으며, 12월 양도소득세(주택양도) 예정신고까지 대상 범위를 확장
 - (양도소득세) 2023년부터 4월부터 계산이 비교적 어렵지 않아 홈택스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양도거래에 대해 국세청이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가 확인만 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제공

V. 국세청 자료를 이용한 효과성 분석



V. 국세청 자료를 이용한 효과성 분석

-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7)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본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였음
 - 대부분의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서면신고에 비해 전자신고가 편리하며, 전자신고로 인해 업무비용이 감소하거나 동일하며,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이 줄어들거나 폐지되더라도 전자신고를 유지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하였음
 - 본 제도의 전자신고율 증가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함
 - 다만, 설문조사에 나타난 응답자의 인식 또는 의도는 현실에서의 행태와 다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실제 전자신고율 등의 자료를 이용한 보다 엄밀한 통계분석이 필요함

- 본 장에서는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본 제도의 일몰 연장 또는 폐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 우선 『국세통계연보』의 세목별 전자신고비율 자료를 활용하여 2004년 제도 시행과 그 이후 주요 개편 전후 제도 대상 세목의 전자신고율에 유의한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함
 - 세목별 추세를 통제한 후 제도 변화 전후 전자신고율에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함
 - 또한 전자신고는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원천세와 본 제도와 무관하게 납세자들이 행정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비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이용률을 대조군으로 하는 이중차분법 분석을 실시하였음
 - 분석 결과 전자신고 세액공제 시행 및 주요 제도 개편이 세목별 전자신고 비율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전자신고 비율이 이미 100%에 근접하여 더 이상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우며, 2019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제도 혜택이 축소되더라도 전자신고 비율이 감소하지는 않음

- 2021년 도입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처치군, 제도의 변화가 없었던 다른 세목을 대조군으로 설정한 분석에서 세목별 선형 추세를 통제할 경우 제도 도입이 전자신고율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7월 1일 시행된 전자고지 세액공제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 세목의 전자고지율을 처치군, 2021년 전후 큰 제도 변화가 없었던 세목의 전자신고율과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사용률을 대조군으로 설정한 분석에서 제도의 전자고지율 증대 효과가 발견되지는 않으나, 제도 도입 초기라는 점은 감안할 필요 있음
-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에 대한 세액공제가 전자신고율 및 전자고지율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찾지 못함
- 많은 경우 세액공제와 무관하게 납세자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업무 처리의 편의를 위해 전산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임

1.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효과성 분석

- 본 절에서는 『국세통계연보』 주요 세목 전자신고 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효과성을 분석함
- 『국세통계연보』에서는 2003년 이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의 전자신고 비율을 제공함
 - 이 중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는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대상이며, 원천세는 대상이 아님
 - 종합소득세는 2009년부터, 법인세와 원천세는 2010년부터 전자신고 건수 중 납세자 본인이 신고한 건수와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한 건수 자료도 제공하고 있음
 - <표 V-1>은 2022년 세목별 전자신고 현황을 보여주며 모든 세목에서 전자신고 비율이 100%에 근접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표 V-1> 2022년 주요 세목별 전자신고 현황

(단위: 건수, %)

구분	총신고 건수(A)	전자신고 건수(B)	본인	세무대리인	전자신고 비율(B/A)
부가가치세	15,091,828	14,650,782	-	-	97.1
종합소득세	12,043,461	11,989,000	8,239,096	3,749,904	99.5
법인세	964,947	961,252	31,801	929,451	99.6
원천세	15,406,589	15,364,471	2,158,476	13,205,995	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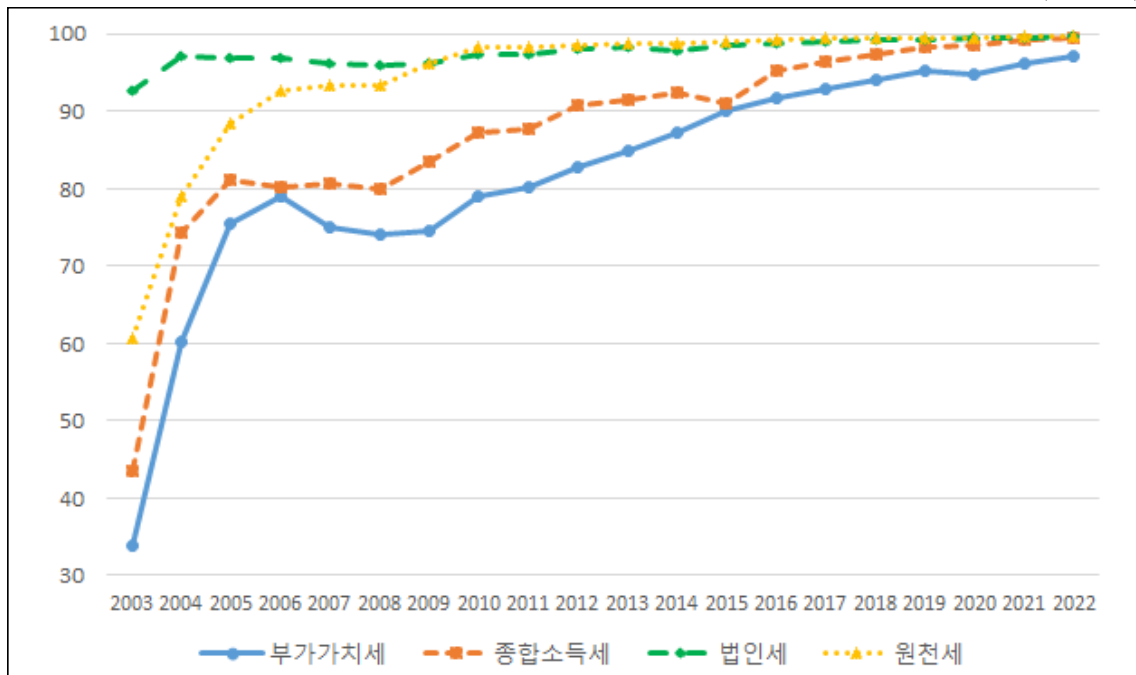
자료: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그림 V-1]은 2003년 이후 세목별 전자신고 비율 추이를 보여줌

- 전자신고가 가능한 세목 대부분 현재 100%에 가까운 전자신고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법인세와 원천세의 전자신고 비율은 2010년도부터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꾸준히 상승하여 현재 100%에 가까운 수준에 도달하였음

[그림 V-1] 연도별 세목별 전자신고 비율

(단위: %)



자료: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 제도 개편 전후 전자신고 비율에 유의한 변화가 있는지 분석하였음

○ 총 4건의 제도 변화를 이용하여 분석

- 2004년 제도 시행: 2004년 1월 1일부터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시행됨
- 2008~2009년 개편: 2008년 공제금액을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한도액도 100만원(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경우 300만원)에서 300만원(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경우 500만원)으로 인상하였음
- 2012년 개편: 공제한도를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는 400만원,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은 1천만원으로 인상하였음
- 2019년 개편: 2018년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부터 공제한도가 세무대리인은 300만원, 세무대리법인은 750만원으로 인하

○ 각 개편에 대해 제도 개편 전 2년 대비 개편 후 2년의 전자신고 비율 변화를 분석

- 3개 세목(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의 연도별 전자신고 비율을 분석한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제도 개편의 효과를 추정
- 구체적으로 종속변수는 세목별·연도별 전자신고 비율이며, 설명변수는 제도 개편 후 여부와 상수항, 그리고 세목별 선형 추세를 통제할 분석을 추가하였음
- 분석별 포함된 기간은 4년(제도 개편 전 2년, 개편 후 2년)이며, '개편 후' 변수는 개편 후 2년의 경우 1, 개편 전 2년의 경우 0의 값을 갖는 변수
- 전자신고 비율 자료가 2003년부터 존재하여 2004년 제도 시행의 경우 2003년에서 2005년까지 3개 연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008~2009년 개편에는 2006년에서 2010년까지 5개 연도 자료를 활용하였음
- 모든 분석은 고정효과(fixed effect) 패널회귀분석 결과이며, 임의효과(random effect) 분석을 사용하더라도 질적인(qualitative) 결론은 달라지지 않음

가. 제도 시행 전후 비교 분석

1) 2004년 제도 시행 효과

□ 2004년 1월 1일부터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 시행 전인 2003년과 제도 시행 후인 2004~2005년 사이 전자신고율에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

- 종속변수는 세목별 연도별 전자신고 비율이며, 설명변수는 제도 시행 이후 여부와 상수항, 그리고 선형 추세 또는 세목별 선형 추세를 통제한 분석을 추가하였음
 - 따라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각 집단으로 하는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함
 - <표 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 추세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 2004년 제도 시행 이후 전자신고율이 유의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추세를 통제할 경우 이러한 효과는 사라짐
 - 즉 홈택스 서비스 개통 등 전자세정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납세자들의 전자신고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였음

<표 V-2> 2004년 제도 시행이 전자신고비율에 미친 영향 분석

구분	(1)	(2)	(3)
2004년 이후	24.18** (7.30)	13.31 (15.06)	13.31 (5.64)
상수	56.68*** (5.96)	-14453.97 (17418.95)	-14453.97 (6518.68)
선형 추세	×	○	×
세목별 선형 추세	×	×	○
R^2	0.2799	0.2988	0.5789
N	9	9	9

주: 1. ()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2.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2) 2008~2009년 개편 효과

- 정부는 2008년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금액을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한도액도 100만원(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경우 300만원)에서 300만원(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경우 500만원)으로 인상하였음
- 제도 개편 전인 2006~2007년과 제도 개편 후인 2008~2010년 사이 전자신고율에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
- 앞의 분석과 동일하게 종속변수는 세목별·연도별 전자신고 비율이며, 설명변수는 제도 개편 이후 여부와 상수항, 그리고 선형 추세 또는 세목별 선형 추

세를 통제한 분석을 추가하였음

- <표 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2009년 제도 개편은 전자신고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

<표 V-3> 2008~2009년 제도 개편이 전자신고비율에 미친 영향 분석

구분	(1)	(2)	(3)
2008년 이후	0.68 (1.26)	-3.19 (2.22)	-3.19 (1.88)
상수	84.64*** (0.97)	-3022.97* (1546.32)	-3022.97** (1308.06)
선형 추세	×	○	×
세목별 선형 추세	×	×	○
R^2	0.0015	0.0173	0.0269
N	15	15	15

주: 1. ()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2.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3) 2012년 제도 개편 효과

- 정부는 2012년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한도를 세무사 및 공인 회계사는 400만원,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은 1천만원으로 인상하였음
 - 제도 개편 전인 2010~2011년과 제도 개편 후인 2012~2013년 사이 전자신고율에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
 - 앞의 분석과 동일하게 종속변수는 세목별·연도별 전자신고 비율이며, 설명변수는 제도 개편 이후 여부와 상수항, 그리고 선형 추세 또는 세목별 선형 추세를 통제한 분석을 추가하였음
 - <표 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이후 전자신고비율에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형 추세를 통제할 경우 이러한 효과가 사라졌지만 공통 선형 추세 대신 세목별 선형 추세를 통제할 경우 전자신고비율이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제도의 효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엄밀한 논의가 필요하며, 본 절 뒷부분의 이중차분법 분석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임

<표 V-4> 2012년 제도 개편이 전자신고비율에 미친 영향 분석

구분	(1)	(2)	(3)
2012년 이후	2.88*** (0.64)	1.26 (1.35)	1.26** (0.47)
상수	88.21*** (0.45)	-1548.96 (1218.08)	-1548.96** (420.20)
선형 추세	×	○	×
세목별 선형 추세	×	×	○
R^2	0.0451	0.0487	0.8792
N	12	12	12

주: 1. ()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2.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4) 2019년 제도 개편 효과

- 정부는 2019년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한도를 세무대리인은 300만원, 세무대리법인은 750만원으로 인하
 - 제도 개편 전인 2017~2018년과 제도 개편 후인 2019~2020년 사이 전자신고율에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
 - 앞의 분석과 동일하게 종속변수는 세목별·연도별 전자신고 비율이며, 설명변수는 제도 개편 이후 여부와 상수항, 그리고 선형 추세 또는 세목별 선형 추세를 통제한 분석을 추가하였음
 - <표 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도가 축소되고 난 후 오히려 전자신고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 추세를 통제할 경우 이러한 효과가 사라져 제도와 무관한 추세적 변화인 것으로 판단됨

<표 V-5> 2019년 제도 개편이 전자신고비율에 미친 영향 분석

구분	(1)	(2)	(3)
2019년 이후	1.11*** (0.32)	0.41 (0.72)	0.41 (0.55)
상수	96.52*** (0.23)	-607.33 (645.16)	-607.33 (496.72)
선형 추세	×	○	×

<표 V-5>의 계속

구분	(1)	(2)	(3)
세목별 선형 추세	×	×	○
R^2	0.0644	0.0708	0.5227
N	12	12	12

주: 1. ()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2.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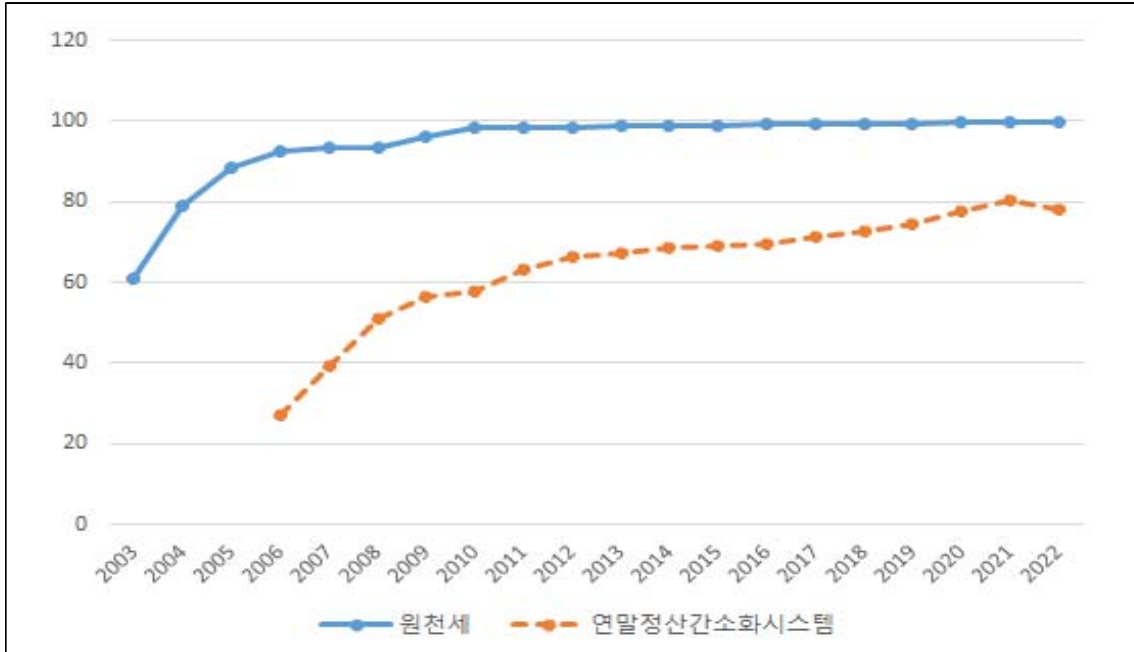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나. 이중차분법 분석

- 위의 분석에서는 제도 개편 전후를 단순히 비교하여 제도 외 다른 요인의 효과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큼
 - 이상적으로 무작위로 선정된 처치군(treatment group)과 대조군(control group)이 존재한다면 두 집단의 제도 개편 전후를 비교하는 이중차분법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음
 -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전자신고 비율 통계가 존재하는 원천세를 대조군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국세통계연보』에서는 연도별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이용 현황을 제공하고 있음
 - 연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 대비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이용자 비율을 납세자들이 본 제도의 개편과 무관하게 전산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비율로 간주할 수 있음
 - 따라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세목(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을 처치군, 원천세와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사용을 대조군으로 설정한 이중차분법을 실시하였음
 - [그림 V-2]는 연도별 원천세 전자신고비율과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이용 비율을 보여줌
 -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대상인 세목들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V-2] 원천세 전자신고 비율 및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이용 비율

(단위: %)



자료: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처치군과 대조군의 제도 시행 전후 변화를 분석하는 이중차분법은 아래의 회귀식으로 분석할 수 있음

$$y_{i,t} = \alpha + \beta_1 \times treat_i + \beta_2 \times after_t + \beta_3 \times treat_i \times after_t + \dots + \epsilon_{i,t}$$

- 여기서 i 는 집단, t 는 연도, $treat_i$ 는 처치군, $after_t$ 는 제도 개편 이후 연도, α 는 상수항, ϵ 은 오차항을 나타냄
- 따라서 다른 변수의 효과는 통제된 상황에서 제도 시행과 관련된 효과를 요약하면 <표 V-6>과 같으며, 따라서 제도의 효과는 교차항의 계수(β_3)와 같음

<표 V-6> 이중차분법 회귀식에서 제도 개편 효과

구분	제도 개편 전	제도 개편 후	차이
처치군	β_1	$\beta_1 + \beta_2 + \beta_3$	$\beta_2 + \beta_3$
대조군	0	β_2	β_2
차이	β_1	$\beta_1 + \beta_3$	β_3

자료: 저자 작성

- 다만 본 분석에서는 고정효과(fixed effect)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따라서 제도 개편 전후 변하지 않는 집단 고정효과는 자동적으로 통제되며 계수 값을 가지지 않음
- 즉,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의 경우 아래의 회귀식으로 분석할 수 있음

$$y_{i,t} = \alpha + \beta_1 \times after_t + \beta_2 \times treat_i \times after_t + \dots + \epsilon_{i,t}$$

- 이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제도의 효과는 교차항의 계수(β_2)와 같음

<표 V-7> 고정효과 패널 이중차분법 회귀식에서 제도 개편 효과

구분	제도 개편 전	제도 개편 후	차이
처치군	0	$\beta_1 + \beta_2$	$\beta_1 + \beta_2$
대조군	0	β_1	β_1
차이	0	β_2	β_2

자료: 저자 작성

1) 2004년 제도 시행 효과

- 2004년 1월 1일부터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 시행 전인 2003년과 제도 시행 후인 2004~2005년 사이 전자신고율에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
 - 종속변수는 세목별·연도별 전자신고 비율이며, 설명변수는 제도 개편 이후 여부, 제도 개편 이후와 처치군의 교차항, 상수항, 그리고 선형 추세 또는 세목별 선형 추세를 통제한 분석을 추가하였음
 - 분석 결과 2004년 제도 시행은 전자신고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V-8> 2004년 제도 도입이 전자신고비율에 미친 영향 분석

구분	(1)	(2)	(3)
2004년 이후	22.91 (12.02)	11.19 (15.47)	8.64 (9.76)
처치군 × 2004년 이후	1.27 (13.88)	1.27 (13.50)	4.68 (11.27)
상수항	57.70*** (4.91)	-15588.82 (13521.32)	-15588.82 (5645.34)
선형 추세	×	○	×

<표 V-8>의 계속

구분	(1)	(2)	(3)
세목별 선형 추세	×	×	○
R^2	0.3275	0.3540	0.5029
N	12	12	12

주: 1. ()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2.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2) 2008~2009년 개편 효과

- 정부는 2008년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금액을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한도액도 100만원(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은 300만원)에서 300만원(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경우 500만원)으로 인상하였음
- 제도 개편 전인 2006~2007년과 제도 개편 후인 2008~2010년 사이 전자신고율에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
- 앞의 분석과 동일하게 종속변수는 세목별·연도별 전자신고 비율이며, 설명변수는 제도 개편 이후 여부, 제도 개편 이후와 처치군의 교차항, 상수항, 그리고 선형 추세 또는 세목별 선형 추세를 통제한 분석을 추가하였음
- 분석 결과 일부 분석에서는 제도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치군에 속한 세목의 전자신고율은 대조군에 속한 세목보다 더 느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목별 선형 추세를 통제할 경우 유의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음

<표 V-9> 2008년 제도 개편이 전자신고비율에 미친 영향 분석

구분	(1)	(2)	(3)
2008년 이후	12.40*** (3.02)	6.43 (4.17)	3.28 (3.19)
처치군 × 2008년 이후	-11.71*** (3.90)	-11.71*** (3.63)	-6.47 (4.12)
상수항	76.00*** (1.48)	-4715.81* (2473.63)	-4715.81*** (1403.69)
선형 추세	×	○	×
세목별 선형 추세	×	×	○
R^2	0.0099	0.0045	0.7674
N	25	25	25

주: 1. ()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2.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3) 2012년 제도 개편 효과

- 정부는 2012년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한도를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는 400만원,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은 1천만원으로 인상하였음
 - 제도 개편 전인 2010~2011년과 제도 개편 후인 2012~2013년 사이 전자신고율에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
 - 앞의 분석과 동일하게 종속변수는 세목별·연도별 전자신고비율이며, 설명변수는 제도 개편 이후 여부, 제도 개편 이후와 처치군의 교차항, 상수항, 그리고 선형 추세 또는 세목별 선형 추세를 통제한 분석을 추가하였음
 - 분석 결과 2012년 제도 개편은 전자신고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V-10〉 2012년 제도 개편이 전자신고비율에 미친 영향 분석

구분	(1)	(2)	(3)
2012년 이후	2.47** (1.02)	0.61 (1.72)	0.37 (0.96)
처치군 × 2012년 이후	0.41 (1.44)	0.41 (1.41)	0.89 (1.35)
상수항	71.18*** (0.51)	-1805.60 (1414.98)	-1805.60** (608.27)
선형 추세	×	○	×
세목별 선형 추세	×	×	○
R^2	0.0065	0.0065	0.0000
N	24	24	24

주: 1. ()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2.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4) 2019년 제도 개편 효과

- 정부는 2019년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한도를 세무대리인은 300만원, 세무대리법인은 750만원으로 인하
 - 제도 개편 전인 2017~2018년과 제도 개편 후인 2019~2020년 사이 전자신고율에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

- 앞의 분석과 동일하게 종속변수는 세목별·연도별 전자신고비율이며, 설명변수는 제도 개편 이후 여부, 제도 개편 이후와 처치군의 교차항, 상수항, 그리고 선형 추세 또는 세목별 선형 추세를 통제한 분석을 추가하였음
- 선형 추세를 통제한 분석에서 처치군에 속하는 세목의 전자신고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목별 선형 추세를 통제한 분석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사라짐

〈표 V-11〉 2019년 제도 개편이 전자신고비율에 미친 영향 분석

구분	(1)	(2)	(3)
2019년 이후	4.93*** (1.55)	1.71 (2.58)	-0.81 (1.31)
처치군 × 2019년 이후	-3.82 (2.19)	-3.82* (2.11)	1.23 (1.85)
상수항	79.57*** (0.78)	-3169.67 (2126.98)	-3169.67*** (833.64)
선형 추세	×	○	×
세목별 선형 추세	×	×	○
R^2	24	24	24
N	0.0449	0.0347	0.9822

주: 1. ()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2.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2.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도입의 효과성 분석

- 본 절에서는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효과성을 분석함
 - 2021년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전자신고분에 대해 1건당 세액공제 2만원 혜택이 제공됨
 -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원천세와,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2021년 전후 큰 제도변화가 없었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를 대조군으로 활용
 - 세목별 추세를 통제하지 않은 분석에서는 2021년 양도소득세 세액공제 제도 도입이 전자신고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이는 2021년 이후 양도소득세와 다른 세목의 전자신고비율 추세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즉, 양도소득세 외에 다른 세목의 전자신고는 이미 안정화되어 2020년대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는 2020년대에 증가하는 추세
- 이러한 추세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세목별 선형 추세를 통제한 분석에서는 2021년 양도소득세 세액공제 제도 도입이 전자신고율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V-12>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도입이 전자신고비율에 미친 영향
(대조군: 원천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구분	(1)	(2)	(3)
2021년 이후	0.74 (1.11)	-2.62 (2.10)	0.42 (0.69)
처치군 × 2021년 이후	17.76*** (2.49)	17.76*** (2.29)	2.55 (1.54)
상수항	83.88*** (0.70)	-3310.19* (1849.92)	-3310.19*** (554.84)
선형 추세	×	○	×
세목별 선형 추세	×	×	○
R^2 (overall)	0.2645	0.2532	0.9668
N	20	20	20

주: 1. ()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2.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3. 전자고지 세액공제의 효과성 분석

- 본 절에서는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전자고지 세액공제의 효과성을 분석함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 기존 우편 고지서 대신 전자 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신청한 경우 1건당 1천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로 2021년 7월 1일 시행됨
 - 국세청 제공 자료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나머지 세목들의 전체 고지건수와 전자고지 건수

- <표 V-13>은 2023년 세목별 전체 고지건수와 전자고지 건수를 보여줌
 - 세액공제 대상 세목들의 전자고지비율은 대략 10~15% 수준

<표 V-13> 2023년 세목별 전자고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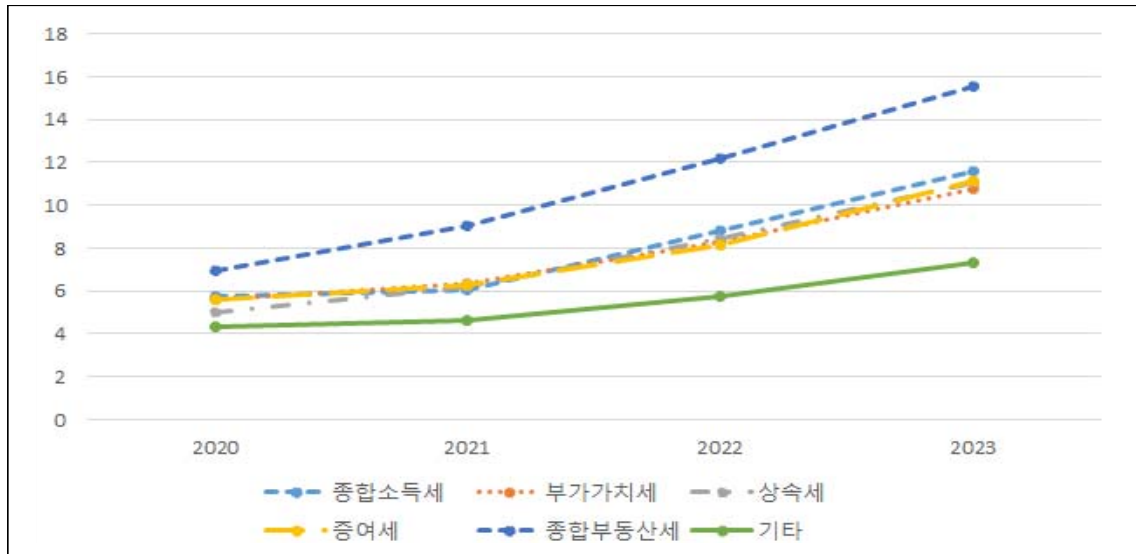
(단위: 천건, %)

세목	전체 고지건수(A)	전자고지 건수(B)	전자고지 비율(B/A)
종합소득세	2,338	271	11.6
부가가치세	6,589	709	10.8
상속세	33	4	11.1
증여세	46	5	11.2
종합부동산세	577	90	15.6
기타	1,854	136	7.4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V-3] 세목별 전자고지율 변화

(단위: %)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본 절의 분석에서는 제도 시행 전후 세목별 전자고지율 변화를 이중차분법으로 분석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종이 우편이 아닌 전자문서의 형태로 전자고지를 받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

- 2020~2023년 사이 전자고지 세액공제 대상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전자고지율은 처치군, 2021년 전후 큰 제도 변화가 없었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의 전자신고율과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사용률을 대조군으로 설정
- 2020년은 제도 시행 전, 2021년 이후는 제도 시행 후로 구분
- 분석 결과 전자고지 세액공제 도입이 해당 세목의 전자고지율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며, 세목별 선형 추세를 통제한 분석에서는 처치군에 속한 세목의 전자고지율이 대조군에 비해 오히려 더 느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도입 초기라는 점은 감안할 필요 있음

<표 V-14> 전자고지 세액공제 도입이 전자고지율에 미친 영향 분석
(대조군: 원천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구분	(1)	(2)	(3)
2021년 이후	0.96 (0.60)	-0.68 (0.84)	1.27 (0.74)
처치군 × 2021년 이후	1.23 (0.85)	1.23 (0.75)	-2.67** (1.05)
상수항	49.88*** (0.35)	-2155.80** (871.39)	-2155.80*** (611.83)
선형 추세	×	○	×
세목별 선형 추세	×	×	○
R^2 (overall)	0.1920	0.1505	0.8805
N	30	30	30

주: 1. ()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2.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Ⅵ. 설문조사를 이용한 효과성 분석



VI. 설문조사를 이용한 효과성 분석

- 설문조사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제도 인지도, 수혜자의 행태변화 여부 등 정책대상자의 인식을 분석함
 - 국세청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이중차분법 등 준실험적 방법론을 통하여 정책의 효과를 식별하고자 하였는데, 정책대상의 지정이 무작위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치에 편의가 존재할 수 있음
 - 이에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세액공제 폐지 등 가상적인 상황에서 수혜자의 행태변화를 분석하여 보완하고자 함
 - 세무대리인에 대한 설문은 기존 심층평가(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에서 이루어졌으며, 본고에서는 국세청 자료를 이용한 효과분석에서 세무대리인에 대한 지원 수준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 가능성을 검토함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본 조사는 개인사업자의 전자신고와 전자고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실시됨
 -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업체 기본 사항, 세무업무 현황
 - 전자신고 이용 행태,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대한 인식, 전자신고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
 - 전자고지 이용 행태, 전자고지 세액공제에 대한 인식
- (조사 방법) 각 사업체 내에서 대표자 또는 세무 관련 업무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전화면접조사(CATI,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를 수행하여 정보를 수집함
 - 응답자 요청이 있을 경우 이메일 링크를 발송하여 자기기입식 조사 병행

- (조사 대상) 기업 DB(한국SMTp 기업DB, 한국콘텐츠미디어)에서 ‘개인사업자’로 구별되어 있는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광역 시도 기준으로 정렬된 명부에서 계통 추출하여 선정된 사업체를 표본 단위로 지정
 - 사업체 접촉 시 직급을 확인하여 사업체 대표자 또는 세무 관련 임직원을 확인 하는 설문을 통해 조사대상 확보

- 2024년 7월 10일 ~ 2024년 7월 18일에 503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2. 표본 특성

- (매출) 매출 규모가 ‘1억 미만’은 14.7%, ‘1억~5억 미만’은 33.8%였으며, ‘10억 이상’은 24.5%였음
 - 제조업이 3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서비스업(32.4%), 도소매업(25.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조사 모집단의 대부분이 부가세 일반과세자(94.0%)였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94.6%) 사업체로 조사됨

<표 VI-1> 최종 표본의 분포

(단위: 개, %)

구분		조사 완료 사례 수	응답 비율
전체		503	100.0
직급	대표자	198	39.4
	임직원	305	60.6
매출액	1억 미만	74	14.7
	1억~5억 미만	170	33.8
	5억~10억 미만	73	14.5
	10억 이상	123	24.5
	무응답	63	12.5
업종	서비스업	163	32.4
	도소매업	127	25.2
	제조업	183	36.4
	기타업종	30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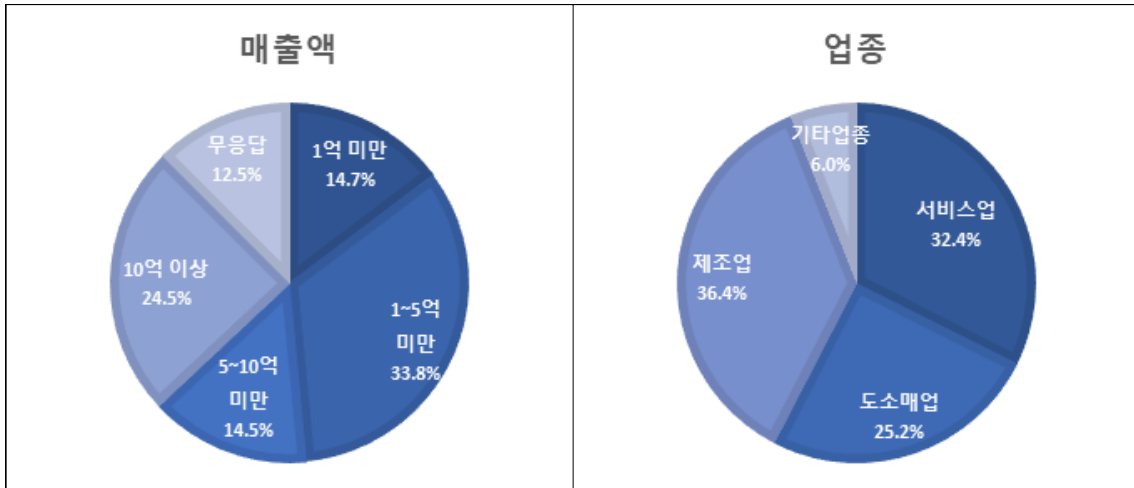
<표 VI-1>의 계속

(단위: 개, %)

구분	조사 완료 사례 수	응답 비율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4.2
	일반과세자	94.0
	간이과세자	1.8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94.6
	비해당	5.4

[그림 VI-1] 최종 표본의 분포(응답비율)

(N=5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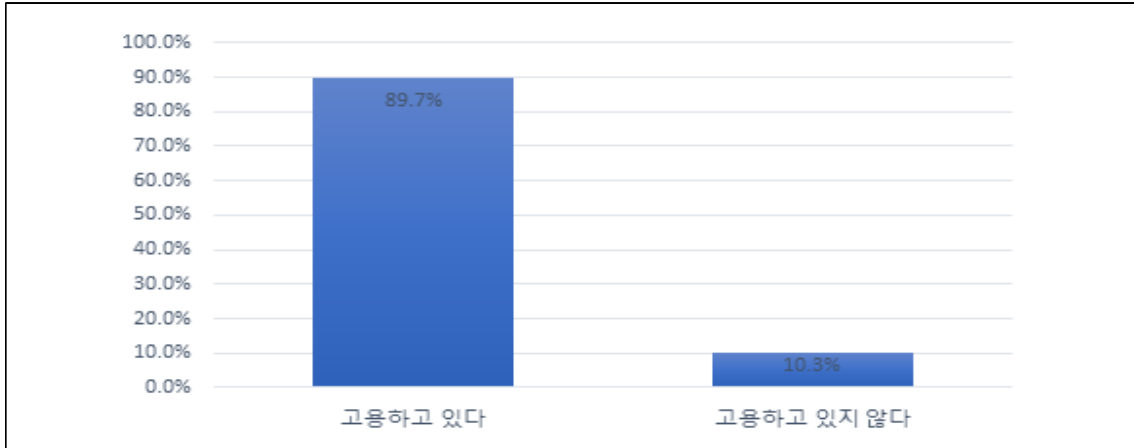
가. 세무대리인 고용 여부

문 1. 귀하의 사업체는 세무업무를 처리 또는 조언해주는 외부의 세무대리인을 고용하고 계십니까?

- (세무업무 현황) 개인사업자 대부분(89.7%)은 세무 업무를 위해 외부 세무 대리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의 세무 대리 비율(78.5%)이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VI-2] 세무대리인 고용 여부(응답비율)

(N=503)



<표 VI-2> 세무대리인 고용 여부(설문조사)

(단위: %)

구분	사례 수	고용하고 있다	고용하고 있지 않다
전체	503	89.7	10.3
매출액	1억 미만	74	23.0
	1억~5억 미만	170	8.8
	5억~10억 미만	73	12.3
	10억 이상	123	3.3
	무응답	63	11.1
업종	서비스업	163	21.5
	도소매업	127	6.3
	제조업	183	4.4
	기타업종	30	3.3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21	4.8
	일반과세자	473	9.7
	간이과세자	9	55.6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476	10.1
	비해당	27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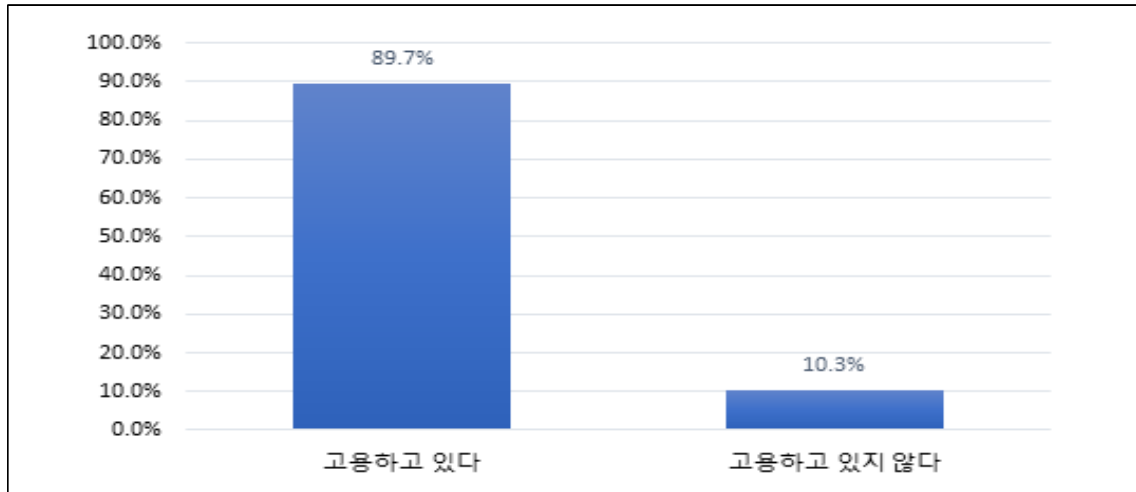
나.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문 2.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하여, 귀하의 사업체는 아래 중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본 조사에 참여한 개인사업자 가운데 면세사업자는 4.2%, 간이과세자는 1.8%로 소수였으며 그 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94.0%)로 분류됨

[그림 VI-3] 부가가치세 납부자 유형(설문조사)

(N=503)



<표 VI-3>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분석(설문조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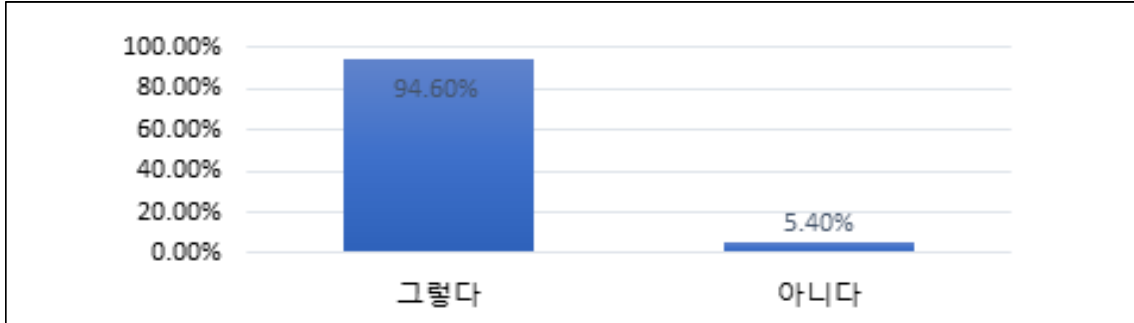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전체	503	4.2	94.0	1.8	
매출액	1억 미만	74	5.4	86.5	8.1
	1억~5억 미만	170	7.1	92.4	0.6
	5억~10억 미만	73	4.1	95.9	0.0
	10억 이상	123	0.8	97.6	1.6
	무응답	63	1.6	98.4	0.0
업종	서비스업	163	3.1	93.9	3.1
	도소매업	127	4.7	92.9	2.4
	제조업	183	4.9	94.5	0.5
	기타업종	30	3.3	96.7	0.0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21	100.0	0.0	0.0
	일반과세자	473	0.0	100.0	0.0
	간이과세자	9	0.0	0.0	100.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476	3.6	95.0	1.5
	비해당	27	14.8	77.8	7.4

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여부

문4. 귀하의 사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대상이십니까?

[그림 VI-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여부(설문조사)

(N=503)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개인사업자의 94.6%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대상이었음
 - 매출 1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대상 비율이 87.8%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VI-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여부 분석(설문조사)

(단위: %)

구분	사례 수	그렇다	아니다	
전체	503	94.6	5.4	
매출액	1억 미만	74	87.8	12.2
	1억~5억 미만	170	95.3	4.7
	5억~10억 미만	73	94.5	5.5
	10억 이상	123	96.7	3.3
	무응답	63	96.8	3.2
업종	서비스업	163	93.9	6.1
	도소매업	127	93.7	6.3
	제조업	183	96.2	3.8
	기타업종	30	93.3	6.7

<표 VI-4>의 계속

(단위: %)

구분		사례 수	그렇다	아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21	81.0	19.0
	일반과세자	473	95.6	4.4
	간이과세자	9	77.8	22.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476	100.0	0.0
	비해당	27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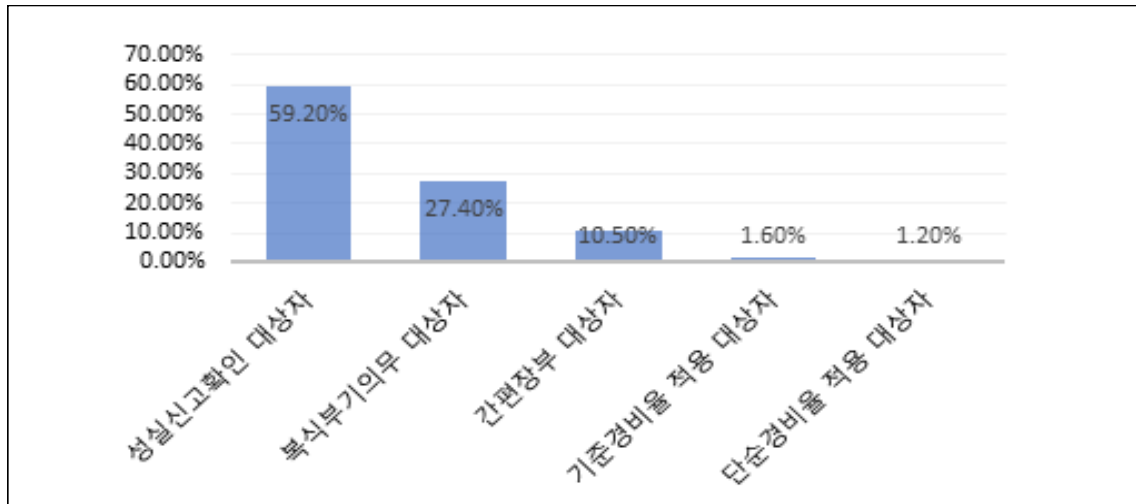
라.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문 3.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귀하의 사업체는 아래 중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59.2%로 가장 많았으며,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27.4%)’, ‘간편장부 대상자(10.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VI-5] 종합소득세 신고자 유형(설문조사)

(N=503)



<표 VI-5>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분석(설문조사)

(단위: %)

구분	사례 수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복식부기 의무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전체	503	59.2	27.4	10.5	1.6	1.2	
매출액	1억 미만	74	40.5	20.3	33.8	2.7	2.7
	1억~5억 미만	170	50.0	36.5	10.0	2.4	1.2
	5억~10억 미만	73	63.0	31.5	5.5	0.0	0.0
	10억 이상	123	81.3	16.3	1.6	0.0	0.8
	무응답	63	58.7	28.6	7.9	3.2	1.6
업종	서비스업	163	41.1	39.3	15.3	1.8	2.5
	도소매업	127	61.4	22.8	13.4	1.6	0.8
	제조업	183	74.3	19.1	5.5	1.1	0.0
	기타업종	30	56.7	33.3	3.3	3.3	3.3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21	57.1	28.6	14.3	0.0	0.0
	일반과세자	473	59.8	27.7	9.5	1.7	1.3
	간이과세자	9	33.3	11.1	55.6	0.0	0.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476	59.7	28.2	9.2	1.7	1.3
	비해당	27	51.9	14.8	33.3	0.0	0.0

3. 전자신고 이용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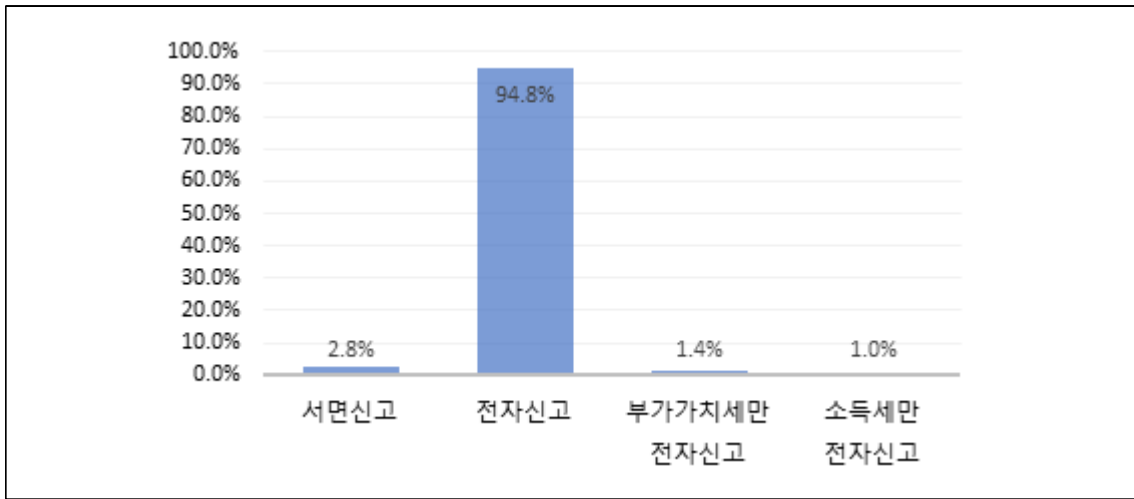
가. 세금 신고 방법

문 5. 귀하의 사업체에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십니까?

- 소득세, 부가세 신고 시 대다수(94.8%)의 개인사업자는 두 세목 모두 ‘전자신고’를 이용하고 있으며, 부가세만 전자신고하는 경우는 1.4%, 소득세만 전자신고하는 경우는 1.0%로 소수임
- 오로지 서면신고로 세금 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2.8%에 불과함
 - 대부분의 세무 집단에서 서면신고(소득세, 부가세 모두) 비중은 한 자릿수로 작게 나타났으며, 부가세 간이과세자의 서면신고(11.1%)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VI-6]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방법별 비율(설문조사)

(N=503)



<표 VI-6> 세금 신고 방법 분석(설문조사)

(단위: %)

구분	사례 수	서면신고	전자신고	부가가치세만 전자신고	소득세만 전자신고	
전체	503	2.8	94.8	1.4	1.0	
매출액	1억 미만	74	2.7	90.5	4.1	2.7
	1억~5억 미만	170	4.1	93.5	0.6	1.8
	5억~10억 미만	73	4.1	95.9	0.0	0.0
	10억 이상	123	1.6	96.7	1.6	0.0
	무응답	63	0.0	98.4	1.6	0.0
업종	서비스업	163	4.9	92.0	1.8	1.2
	도소매업	127	2.4	96.1	1.6	0.0
	제조업	183	1.6	95.6	1.1	1.6
	기타업종	30	0.0	100.0	0.0	0.0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21	0.0	81.0	0.0	19.0
	일반과세자	473	2.7	95.6	1.5	0.2
	간이과세자	9	11.1	88.9	0.0	0.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476	2.5	95.6	1.3	0.6
	비해당	27	7.4	81.5	3.7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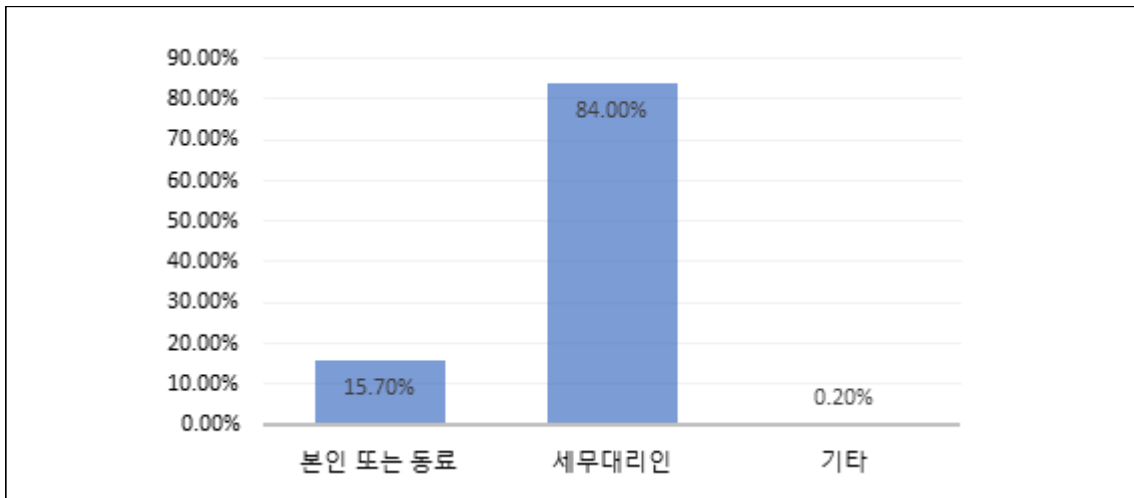
나. 전자신고 주체

문 6. (문 5=2, 3, 4 전자신고 경험사업체) 귀하의 사업체에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신고를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전자신고를 이용하고 있는 사업체(N=489) 가운데 본인 또는 동료는 직접 전자신고 하는 경우는 15.7%로 소수였으며, 대체로 세무대리인(84.0%)을 통해 전자신고를 하고 있음
- 대부분의 세부 집단에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는 비중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가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무대리인 이용 비중이 62.5%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VI-7] 전자신고를 수행한 주체 비율(설문조사)

(N=503)



〈표 VI-7〉 전자신고 주체 분석(설문조사)

(단위: %)

구분	사례 수	본인 또는 동료	세무대리인	
전체	489	15.7	84.0	
매출액	1억 미만	72	30.6	69.4
	1억~5억 미만	163	12.3	87.7
	5억~10억 미만	70	12.9	85.7
	10억 이상	121	8.3	91.7
	무응답	63	25.4	74.6
업종	서비스업	155	28.4	71.6
	도소매업	124	13.7	86.3
	제조업	180	7.2	92.2
	기타업종	30	10.0	90.0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21	9.5	90.5
	일반과세자	460	15.7	84.1
	간이과세자	8	37.5	62.5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464	15.9	83.8
	비해당	25	12.0	88.0

다. 전자신고 선택 이유

문 7. (문 5=2, 3, 4 전자신고 경험사업체) 귀하의 사업체에서 전자신고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부터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보기 로테이션)

- 전자신고를 한 응답자들은 전자신고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서면신고에 비해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36.4%)’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세무대리인의 의견에 따름(27.4%)’을 지목함
 -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중은 6.7%로 ‘기타’를 제외하고 가장 낮게 나타남
 - ‘신고서상 오류확인과 정정이 편리해서’ 및 ‘세무서의 권유로’를 지목한 응답자는 각각 15.5%와 8.8%임
 - 대부분의 세부집단에서 전자신고 선택 사유의 상대적 중요도는 유사하게 나타남

<표 VI-8> 전자신고 선택 이유(설문조사)

사례 수: 전자신고 경험사업체(N=489)	응답비율	
	1순위	1+2순위
서면신고에 비해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36.4%	56.6%
세무대리인의 의견에 따름	27.4%	41.7%
신고서상 오류확인과 정정이 편리해서	15.5%	36.8%
세무서의 권유로	8.2%	13.9%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7%	16.6%
기타	5.7%	15.5%

<표 VI-9> 1순위 응답 기준 전자신고 선택 이유 분석(설문조사)

(단위: %)

구분	사례 수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의견에 따름	신고서상 오류확인과 정정이 편리해서	세무서의 권유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489	36.4	27.4	15.5	8.2	6.7	
매출액	1억 미만	72	50.0	13.9	15.3	6.9	9.7
	1억~5억 미만	163	31.9	32.5	15.3	9.2	4.3
	5억~10억 미만	70	40.0	28.6	12.9	8.6	7.1
	10억 이상	121	34.7	28.1	15.7	8.3	9.1
	무응답	63	31.7	27.0	19.0	6.3	4.8
업종	서비스업	155	39.4	23.9	18.7	7.7	5.8
	도소매업	124	36.3	25.8	15.3	9.7	8.1
	제조업	180	33.9	31.1	12.2	7.8	7.2
	기타업종	30	36.7	30.0	20.0	6.7	3.3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21	57.1	28.6	0.0	4.8	0.0
	일반과세자	460	35.0	27.8	16.3	8.0	7.2
	간이과세자	8	62.5	0.0	12.5	25	0.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464	36.4	27.6	15.3	8.4	6.5
	비해당	25	36.0	24.0	20.0	4.0	12.0

라. 서면신고 선택 이유

문 8. (문 5=1 서면신고 사업체) 귀하의 사업체에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신고를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 로테이션)

- 서면신고 중인 사업자(N=14개)들은 ‘전자신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4개)’, ‘전자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3개)’, ‘전자신고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2개)’ 등의 이유로 전자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적어서(1개)’라고 응답한 사업자가 가장 적음
- 다만, 본 설문문의 경우 관측치수가 적어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

<표 VI-10> 서면신고 사업체의 서면신고 이유(설문조사)

사례 수: 서면신고 사업체(N=14)	응답비율(개)
전자신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28.6%(4개)
전자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전자신고를 위한 시간과 비용 때문에)	21.4%(3개)
전자신고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14.3%(2개)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적어서	7.1%(1개)
기타	28.6%(4개)

<표 VI-11> 소득세·부가세 신고 시 서면신고 선택 이유 분석(설문조사)

(단위: %)

구분	사례 수	전자신고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전자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전자신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어서
전체	14	14.3	21.4	28.6	7.1
매출액	1억 미만	2	0.0	100.0	0.0
	1억~5억 미만	7	28.6	0.0	42.9
	5억~10억 미만	3	0.0	0.0	33.3
	10억 이상	2	0.0	50.0	0.0

<표 VI-11>의 계속

(단위: %)

구분	사례 수	전자신고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전자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전자신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어서	
업종	서비스업	8	25.0	12.5	37.5	0.0
	도소매업	3	0.0	33.3	33.3	0.0
	제조업	3	0.0	33.3	0.0	33.3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일반과세자	13	15.4	15.4	30.8	7.7
	간이과세자	1	0.0	100.0	0.0	0.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12	8.3	16.7	33.3	8.3
	비해당	2	50.0	50.0	0.0	0.0

4.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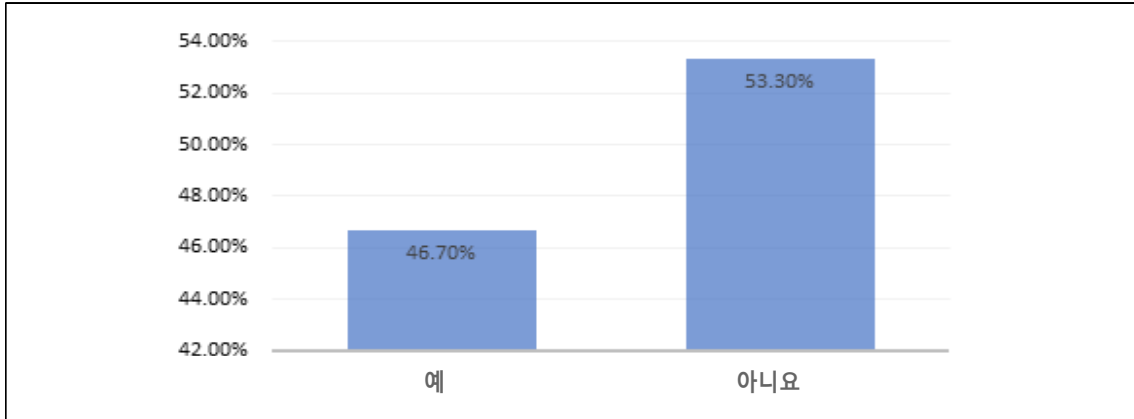
가. 전자신고 세액공제 인지도

문 9. 납세자가 서면신고가 아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전자신고’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다수의 개인사업자가 전자신고를 이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를 알고 있는 사업자는 46.7%였으며, 모르고 있는 사업자는 53.3%로 비인지 비율이 높은 상황임
- 대부분의 세부집단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를 모르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모르는 응답자의 비중이 40% 이상임
 -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의 45.5%, ‘서비스업’ 사업자의 42.9%가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모른다고 응답함

[그림 VI-8] 전자신고 세액공제 인지 여부(설문조사)

(N=503)



<표 VI-12> 전자신고 세액공제 인지도 분석(설문조사)

(단위: %)

구분		사례 수	예	아니요
전체		503	46.7	53.3
매출액	1억 미만	74	48.6	51.4
	1억~5억 미만	170	42.9	57.1
	5억~10억 미만	73	45.2	54.8
	10억 이상	123	54.5	45.5
	무응답	63	41.3	58.7
업종	서비스업	163	57.1	42.9
	도소매업	127	43.3	56.7
	제조업	183	43.2	56.8
	기타업종	30	26.7	73.3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21	9.5	90.5
	일반과세자	473	48.4	51.6
	간이과세자	9	44.4	55.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476	48.1	51.9
	비해당	27	22.2	77.8

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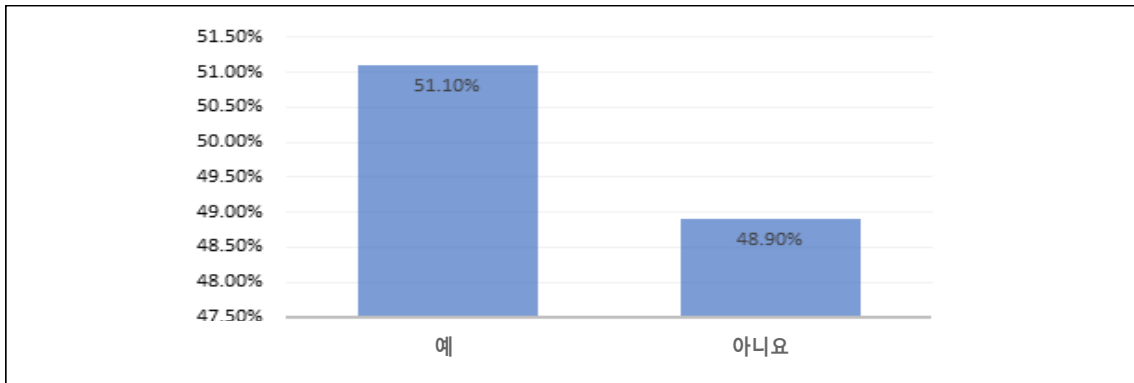
문 10. (문 9=1 전자신고 세액공제 인식층)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를 알고 있는 사업자(N=235개)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할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알고 있는지 물었을 때,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 수준(51.1%)으로 나타남

- 모든 세부 집단에서 비인지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남
 - 표본 수가 작은 간이사업자의 경우(N=4) 제외

[그림 VI-9]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 인지 여부(설문조사)

(N=235)



<표 VI-13>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 인지도 분석(설문조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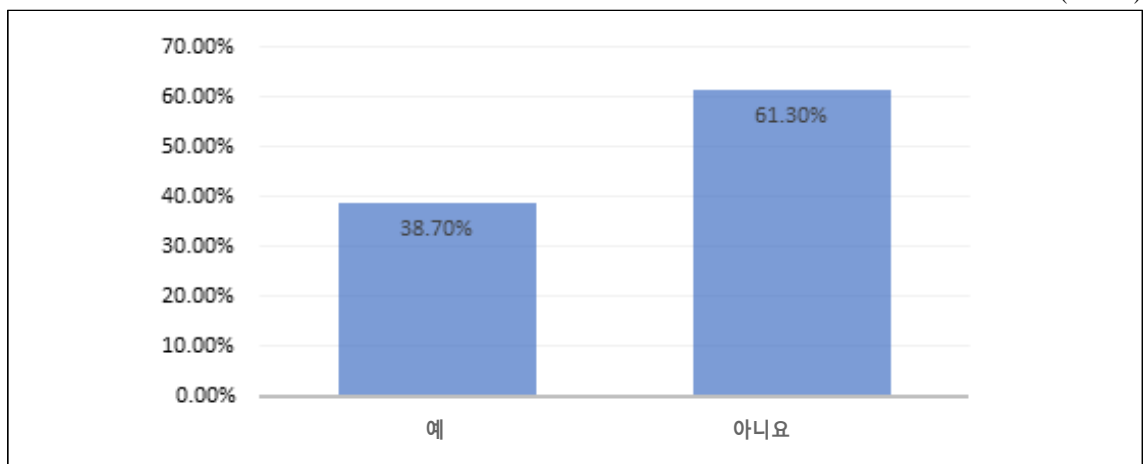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예	아니요
전체		235	51.1	48.9
매출액	1억 미만	36	50.0	50.0
	1억~5억 미만	73	49.3	50.7
	5억~10억 미만	33	51.5	48.5
	10억 이상	67	52.2	47.8
	무응답	26	53.8	46.2
업종	서비스업	93	54.8	45.2
	도소매업	55	47.3	52.7
	제조업	79	51.9	48.1
	기타업종	8	25.0	75.0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2	50.0	50.0
	일반과세자	229	50.7	49.3
	간이과세자	4	75.0	25.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229	51.1	48.9
	비해당	6	50.0	50.0

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 인지도

문 11. (문 9=1 전자신고 세액공제 인식층) 귀하께서는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를 알고 있는 사업자(N=235개)에게 세액공제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본 결과, 알고 있다는 비율이 38.7%로 인지도는 낮게 나타남
- 세액공제 금액을 모르는 비율은 세부 집단에 따라 47.2%(‘매출액 1억 미만’, N=36)에서 83.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비해당’, N=6) 수준

[그림 VI-10]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 인지 여부(설문조사)



<표 VI-14>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 인지도 분석(설문조사)

(단위: %)

구분		사례 수	예	아니요
전체		235	38.7	61.3
매출액	1억 미만	36	52.8	47.2
	1억~5억 미만	73	32.9	67.1
	5억~10억 미만	33	48.5	51.5
	10억 이상	67	29.9	70.1
	무응답	26	46.2	53.8

<표 VI-14>의 계속

(단위: %)

구분		사례 수	예	아니요
업종	서비스업	93	52.7	47.3
	도소매업	55	32.7	67.3
	제조업	79	26.6	73.4
	기타업종	8	37.5	62.5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2	50.0	50.0
	일반과세자	229	38.9	61.1
	간이과세자	4	25.0	75.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229	39.3	60.7
	비해당	6	16.7	83.3

라. 전자신고 선택 의향(서면신고 사업체)

문 12. (문 5=1 서면신고 사업체) 납세자가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금을 직접 신고한 경우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는 2만원, 부가가치세는 1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앞으로 전자신고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 서면신고 사업자에게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을 알려주고, 향후 전자신고 의향을 물었을 때, 긍정적인 답변(‘매우 그렇다’ 혹은 ‘그런 편이다’)을 한 경우는 14개 업체 중 2건에 그침
 - 향후 전자신고로 전환할 의향에 대해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7개, ‘전혀 그렇지 않다’가 5개로 서면신고 사업자들의 전자신고 전환에 부정 의견이 많았음
 - 다만, 본 설문문의 경우 관측치수가 적어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

<표 VI-15> 서면신고 사업체의 향후 전자신고 선택 의향(설문조사)

사례 수: 서면신고 사업체(N=14)	응답비율(개)	
매우 그렇다	7.1%(1개)	긍정 14.3%(2개)
그런 편이다	7.1%(1개)	
그렇지 않은 편이다	50.0%(7개)	부정 85.7%(12개)
전혀 그렇지 않다	35.7%(5개)	

<표 VI-16> 서면신고 사업체의 향후 전자신고 선택 의향 분석(설문조사)

(단위: %)

구분		사례 수	긍정	부정
전체		14	14.3	85.7
매출액	1억 미만	2	50.0	50.0
	1억~5억 미만	7	14.3	85.7
	5억~10억 미만	3	0.0	100.0
	10억 이상	2	0.0	100.0
업종	서비스업	8	12.5	87.5
	도소매업	3	33.3	66.7
	제조업	3	0.0	100.0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일반과세자	13	15.4	84.6
	간이과세자	1	0.0	100.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12	16.7	83.3
	비해당	2	0.0	100.0

다. 세액공제 2배 인상 시 전자신고 선택 의향(서면신고 사업체)

문 13. (문 5=1 서면신고 사업체) 만약,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에서 각각 공제를 2배로 인상할 경우 전자신고를 선택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서면신고 사업자들에게 현 기준의 공제금액을 2배로 인상할 경우 전자신고 의향에 대해 추가 질문했을 때도 긍정(N=2)과 부정(N=12)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음
- 다만, 본 설문문의 경우 관측치수가 적어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

<표 VI-17> 세액공제 확대 시 서면신고 사업체의 전자신고 선택 의향(설문조사)

사례 수: 서면신고 사업체(N=14)	응답비율(개)	
매우 그렇다	7.1%(1개)	긍정 14.3%(2개)
그런 편이다	7.1%(1개)	
그렇지 않은 편이다	42.9%(6개)	부정 85.7%(12개)
전혀 그렇지 않다	42.9%(6개)	

<표 VI-18> 세액공제 확대 시 서면신고 사업체의 전자신고 선택 의향 분석(설문조사)

(단위: %)

구분		사례 수	긍정	부정
전체		14	14.3	85.7
매출액	1억 미만	2	0.0	100.0
	1억~5억 미만	7	28.6	71.4
	5억~10억 미만	3	0.0	100.0
	10억 이상	2	0.0	100.0
업종	서비스업	8	12.5	87.5
	도소매업	3	33.3	66.7
	제조업	3	0.0	100.0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일반과세자	13	15.4	84.6
	간이과세자	1	0.0	100.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12	16.7	83.3
	비해당	2	0.0	100.0

바. 세액공제 2배 축소 시 전자신고 유지 의향(전자신고 사업체)

문 14. (문 5=2, 3, 4 전자신고 경험사업체) 만약,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에서 각각 공제를 절반으로 축소할 경우 전자 신고를 유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전자신고 사업자(N=489)에게 현 공제 금액을 절반으로 축소할 경우, 향후 전자신고 유지 의향을 물었을 때, 긍정적인 답변(‘매우 그렇다’ 혹은 ‘그런 편이다’)을 한 경우는 90%로, 많은 사업자가 공제 금액 축소와 상관없이 전자 신고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매출액 규모, 업종과 상관없이 전자신고 공제금액의 축소 시 전자 신고를 유지 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세부 집단에 따른 긍정 대답 비율은 75.0%(‘간이과세자’, N=8)에서 100.0%(‘면세사업자’, N=21)

<표 VI-19> 세액공제 축소 시 전자신고 사업체의 전자신고 선택 의향(설문조사)

사례 수: 전자신고 경험사업체(N=489)	응답비율	
매우 그렇다	38.2%	긍정 90.0%
그런 편이다	51.7%	
그렇지 않은 편이다	6.5%	부정 10.0%
전혀 그렇지 않다	3.5%	

<표 VI-20> 세액공제 축소 시 전자신고 사업체의 전자신고 선택 의향 분석(설문조사)
(단위: %)

구분		사례 수	긍정	부정
전체		489	90.0	10.0
매출액	1억 미만	72	91.7	8.3
	1억~5억 미만	163	89.0	11.0
	5억~10억 미만	70	88.6	11.4
	10억 이상	121	91.7	8.3
	무응답	63	88.9	11.1
업종	서비스업	155	87.7	12.3
	도소매업	124	91.9	8.1
	제조업	180	90.6	9.4
	기타업종	30	90.0	10.0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21	100.0	0.0
	일반과세자	460	89.8	10.2
	간이과세자	8	75.0	25.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464	89.7	10.3
	비해당	25	96.0	4.0

사. 세액공제 폐지 시 전자신고 유지 의향(전자신고 사업체)

문 15. (문 5=2, 3, 4 전자신고 경험사업체)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폐지될 경우, 귀하는 전자 신고를 유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전자신고 사업자(N=489)에게 현 공제 제도가 폐지될 경우 전자신고 유지 의향에 대해 추가 질문했을 때도 긍정(‘매우 그렇다’ 혹은 ‘그런 편이다’) 비율이 88.1%로, 절반 축소 가정 시 응답 현황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남

- 세부 집단에 따른 긍정 대답 비율은 79.8%('1억 미만', N=72)에서 93.3%('기타 업종', N=30)

<표 VI-21> 세액공제 폐지 시 전자신고 사업체의 전자신고 선택 의향(설문조사)

사례 수: 전자신고 경험사업체(N=489)	응답비율	
매우 그렇다	36.0%	긍정 88.1%
그런 편이다	52.1%	
그렇지 않은 편이다	6.7%	부정 11.9%
전혀 그렇지 않다	5.1%	

<표 VI-22> 세액공제 폐지 시 전자신고 사업체의 전자신고 선택 의향 분석(설문조사)

(단위: %)

구분		사례 수	긍정	부정
전체		489	88.1	11.9
매출액	1억 미만	72	79.2	20.8
	1억~5억 미만	163	90.2	9.8
	5억~10억 미만	70	87.1	12.9
	10억 이상	121	90.9	9.1
	무응답	63	88.9	11.1
업종	서비스업	155	91.0	9.0
	도소매업	124	85.5	14.5
	제조업	180	86.7	13.3
	기타업종	30	93.3	6.7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21	90.5	9.5
	일반과세자	460	88.0	12.0
	간이과세자	8	87.5	12.5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464	88.1	11.9
	비해당	25	88.0	12.0

아. 세액공제 전자신고 활성화 기여도

문 16. 귀하는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앞선 설문들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응답자들은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87.3%)
- 세부 집단에서 긍정(‘매우 도움된다’ 혹은 ‘도움이 된다’)으로 답한 비율은 77.8%(‘비해당’, N=27)에서 90.6%(‘도소매업’, N=127)

<표 VI-23> 세액공제 전자신고 활성화 기여도(설문조사)

사례 수: 전체(N=503)	응답비율	
매우 도움된다	25.4%	긍정 87.3%
도움이 된다	61.8%	
도움이 되지 않는다	9.7%	부정 12.7%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0%	

<표 VI-24> 세액공제 전자신고 활성화 기여도 분석(설문조사)

(단위: %)

구분		사례 수	긍정	부정
전체		503	87.3	12.7
매출액	1억 미만	74	90.5	9.5
	1억~5억 미만	170	80.6	19.4
	5억~10억 미만	73	87.7	12.3
	10억 이상	123	92.7	7.3
	무응답	63	90.5	9.5
업종	서비스업	163	84.7	15.3
	도소매업	127	90.6	9.4
	제조업	183	88.0	12.0
	기타업종	30	83.3	16.7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21	81.0	19.0
	일반과세자	473	87.5	12.5
	간이과세자	9	88.9	11.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476	87.8	12.2
	비해당	27	77.8	22.2

자. 전자신고 편리성 공감도

문 17. 귀하는 전자신고가 서면신고에 비해 다음의 편리성에 대한 문장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는 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4점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자는 전자신고의 편리성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간·장소의 제약, 관련 인프라 등 다양한 측면의 편리성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편리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문항에 따라 95.0%에서 97.2%로 나타남
 - 특히 긍정 비율이 높은 특성은 ‘2) 시간적으로 자유롭다’로, 응답자의 97.2%가 긍정적으로 인식함
 - ‘4) 접수확인, 신고내역 즉시 손쉽게 확인’, ‘5) 홈택스 전자납부’에 대한 긍정 인식 비율(96.8%)도 높게 나타남

〈표 VI-25〉 전자신고 편리성 공감도(설문조사)

사례 수: 전체(N=503)	응답비율	
	긍정	부정
긍정(매우 동의함 + 동의하는 편), 부정(전혀 동의 안 함 + 동의 안 하는 편)		
1) 세무서나 우체국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손쉽게 신고가 가능함	96.0%	4.0%
2) 이용 가능 시간이 6시부터 24시까지이므로 시간적으로 자유로움	97.2%	2.8%
3) 미리채움서비스, 세금 자동 계산, 단순오류 자동검증기능 등으로 세액계산이 편리함	95.0%	5.0%
4) 전자신고 완료 즉시 접수 확인이 가능하며, 홈택스를 통해 신고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음	96.8%	3.2%
5)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손쉽게 전자납부가 가능함	96.8%	3.2%
6) 서식출력이나 우편송달 등에 드는 비용이 절감됨	95.6%	4.4%

5. 전자고지 이용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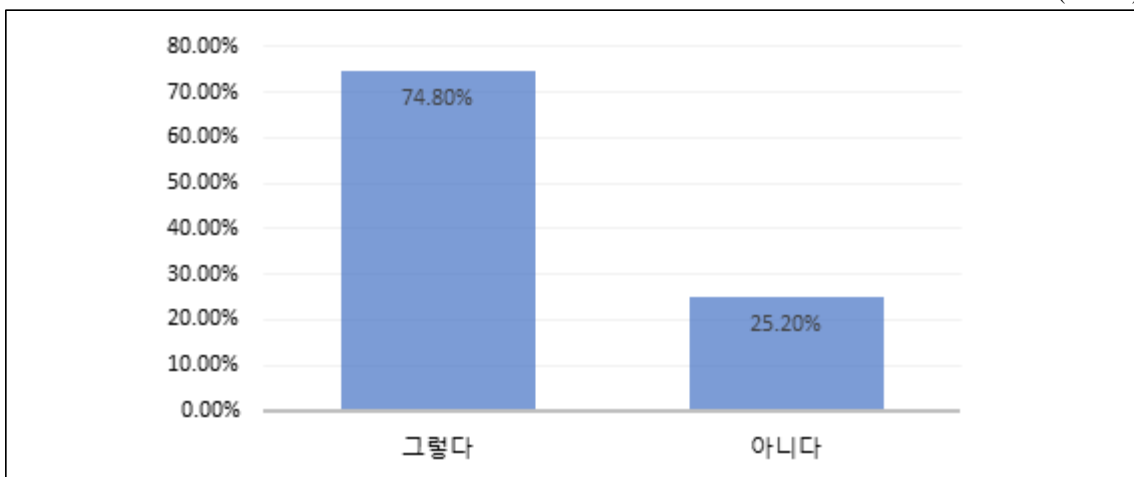
가.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 여부

문 18. 귀하는 국세청의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전자고지’란 종이 고지서 대신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이나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서를 받는 것. 휴대폰으로도 국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음)

- 현재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4.8%로, 실제 전자고지 이용 비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 세부 집단별 전자고지 이용 비율은 33.3%(‘간이과세자’)에서 86.7%(‘기타 업종’)
 - 국세청 자료에 따른 세목별 전자고지율은 2020년 5~7%, 2023년 10~16%
 - 간이과세자 등 영세사업자의 비중이 적은 표본의 특성 때문에 설문조사에서 전자고지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 또한 응답자가 다른 제도와 국세 전자고지를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음
 - 2020년 이후 전자고지율 추세를 고려하면, 1년 만에 전자고지율이 급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그림 VI-11]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 여부(설문조사)

(N=503)



<표 VI-26>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 여부(설문조사)

(단위: %)

구분		사례 수	그렇다	아니다
전체		503	74.8	25.2
매출액	1억 미만	74	77.0	23.0
	1억~5억 미만	170	77.1	22.9
	5억~10억 미만	73	72.6	27.4
	10억 이상	123	74.0	26.0
	무응답	63	69.8	30.2
업종	서비스업	163	74.2	25.8
	도소매업	127	76.4	23.6
	제조업	183	72.1	27.9
	기타업종	30	86.7	13.3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21	71.4	28.6
	일반과세자	473	75.7	24.3
	간이과세자	9	33.3	66.7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476	75.4	24.6
	비해당	27	63.0	37.0

나. 전자고지 선택 이유

문 19. (문 18=1 전자고지 이용자) 귀하가 전자고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부터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보기 로테이션)

-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 사업자(N=376)에게 이용 이유를 물었을 때, ‘언제든 편리하게 국세 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서’가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다음으로 ‘세무대리인의 권유로’라고 답한 비율이 16.0%, ‘전자고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라고 답한 비율이 9.6%임

<표 VI-27>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자의 전자고지 선택 이유(설문조사)

사례 수: 전자고지 이용자(N=376)	응답비율	
	1순위	1+2순위
언제든 편리하게 국세 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서	47.1%	66.8%
세무대리인의 권유로	16.0%	27.9%
전자고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9.6%	22.1%
종이 고지서 사용을 줄여 자원이 절약되므로	9.3%	21.0%
우편발송 비용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8.8%	22.1%
세무서의 권유로	5.9%	10.9%
기타	3.5%	10.6%

<표 VI-28> 1순위 응답기준 전자고지 선택 이유 분석(설문조사)

(단위: %)

구분	사례 수	언제든 편리하게 내역 확인	세무 대리인의 권유로	전자고지 세액공제 때문에	종이 고지서 줄여 자원 절약	사회적 비용 절감	세무서의 권유로	
전체	376	47.1	16.0	9.6	9.3	8.8	5.9	
매출액	1억 미만	57	59.6	10.5	8.8	7.0	14.0	0.0
	1억~5억 미만	131	36.6	21.4	10.7	11.5	7.6	7.6
	5억~10억 미만	53	56.6	15.1	3.8	9.4	9.4	1.9
	10억 이상	91	49.5	14.3	8.8	6.6	7.7	9.9
	무응답	44	45.5	11.4	15.9	11.4	6.8	4.5
업종	서비스업	121	47.9	16.5	9.1	9.9	10.7	1.7
	도소매업	97	47.4	12.4	12.4	8.2	6.2	9.3
	제조업	132	46.2	18.2	8.3	9.1	8.3	6.8
	기타업종	26	46.2	15.4	7.7	11.5	11.5	7.7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15	46.7	26.7	13.3	0.0	13.3	0.0
	일반과세자	358	47.5	15.4	9.2	9.8	8.4	6.1
	간이과세자	3	0.0	33.3	33.3	0.0	33.3	0.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359	46.8	16.2	9.7	8.9	8.9	6.1
	비해당	17	52.9	11.8	5.9	17.6	5.9	0.0

다. 전자고지 비이용 이유

문 20. (문 18=2 전자고지 비이용자) 귀하께서 국세청의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 로테이션)

- 전자고지 비이용자(N=127)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전자고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32.3%)’가 가장 많았고, ‘전자고지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21.3%)’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전자고지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라고 답한 비율은 15.7%
 - ‘전자고지에 대한 인센티브(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3.9%에 불과함
 - 세부 집단에서 ‘전자고지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0.0%에서 15.8%임

<표 VI-29> 전자고지 비이용 이유(설문조사)

사례 수: 전자고지 비이용자(N=127)	응답비율
전자고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32.3%
전자고지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21.3%
전자고지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전자고지 신청을 위한 시간과 비용 때문에)	15.7%
전자고지에 대한 인센티브(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어서	3.9%
기타	26.8%

<표 VI-30> 전자고지 비이용 이유 분석(설문조사)

(단위: %)

구분	사례 수	전자고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전자고지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전자고지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전자고지에 대한 인센티브 적어서	
전체	127	32.3	21.3	15.7	3.9	
매출액	1억 미만	17	23.5	29.4	35.3	0.0
	1억~5억 미만	39	35.9	17.9	10.3	0.0
	5억~10억 미만	20	25.0	35.0	5.0	10.0
	10억 이상	32	28.1	15.6	28.1	0.0
	무응답	19	47.4	15.8	0.0	15.8
업종	서비스업	42	38.1	31.0	7.1	2.4
	도소매업	30	33.3	16.7	20.0	3.3
	제조업	51	27.5	17.6	19.6	5.9
	기타업종	4	25.0	0.0	25.0	0.0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6	66.7	16.7	0.0	0.0
	일반과세자	115	30.4	20.9	16.5	4.3
	간이과세자	6	33.3	33.3	16.7	0.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117	32.5	21.4	14.5	4.3
	비해당	10	30.0	20.0	30.0	0.0

6. 전자고지 세액공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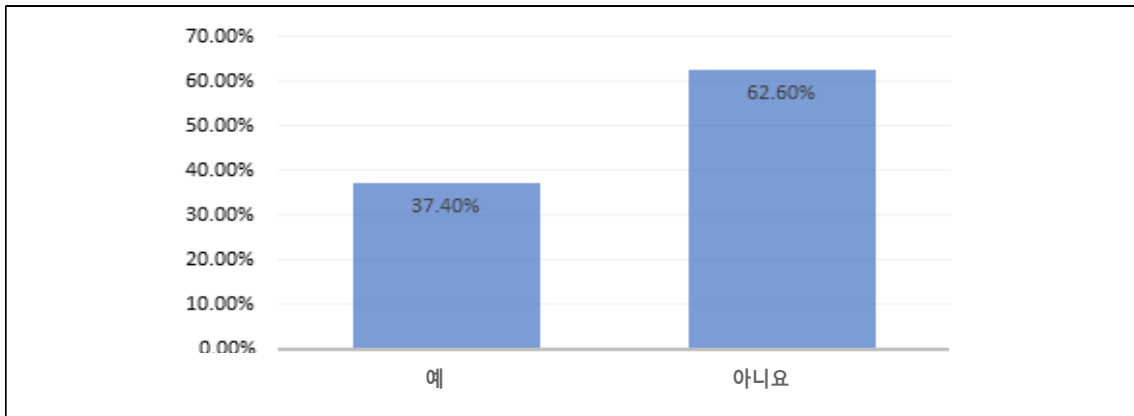
가. 전자고지 세액공제 인지도

문 21. 납세자가 종이 고지서 대신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이나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서를 받는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전자고지 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전자고지 세액공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37.4%로 ‘전자신고 세액공제’ 인지도(46.7%)보다 낮게 나타남
- 세부 집단별 전자고지 세액공제 인지도는 20.0%(‘기타업종’)~45.5%(‘매출액 10억 이상’)로 나타남

[그림 VI-12] 전자고지 세액공제 인지 여부(설문조사)

(N=503)



<표 VI-31> 전자고지 세액공제 인지도 분석(설문조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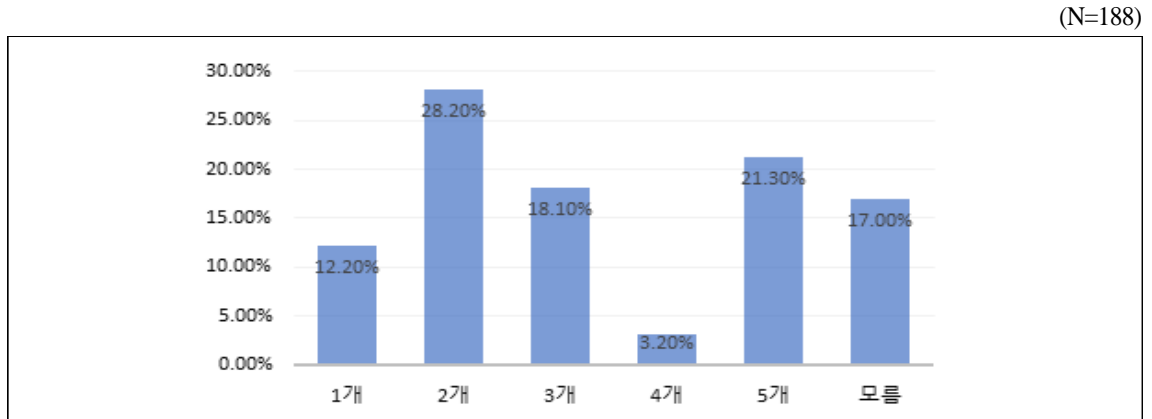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예	아니요
전체		503	37.4	62.6
매출액	1억 미만	74	40.5	59.5
	1억~5억 미만	170	32.4	67.6
	5억~10억 미만	73	31.5	68.5
	10억 이상	123	45.5	54.5
	무응답	63	38.1	61.9
업종	서비스업	163	37.4	62.6
	도소매업	127	40.2	59.8
	제조업	183	38.3	61.7
	기타업종	30	20.0	80.0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21	23.8	76.2
	일반과세자	473	38.1	61.9
	간이과세자	9	33.3	66.7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476	38.0	62.0
	비해당	27	25.9	74.1

나. 전자고지 세액공제 인지 항목 수

문 22. (문 21=1 전자고지 세액공제 인식층) 전자고지 세액공제 대상 세목 5개 중에 몇 가지를 알고 계십니까?

- 전자고지 세액공제 인식층(N=188)이 공제 세목을 몇 개나 알고 있는지 물었는데, 5개 모두 알고 있는 경우는 21.3%로 조사됨
- 2개 알고 있다는 응답이 28.2%로 가장 많았고, ‘구체적인 세목을 모르는’ 경우는 17.0%에 달함

[그림 VI-13] 세목 기준 전자고지 세액공제 인식층 조사(설문조사)



<표 VI-32> 전자고지 세액공제 인식층 분석(설문조사)

(단위: %)

구분	사례 수	1개	2개	3개	4개	5개	구체적인 세목은 모름	
전체	188	12.2	28.2	18.1	3.2	21.3	17.0	
매출액	1억 미만	30	13.3	30.0	16.7	3.3	16.7	20.0
	1억~5억 미만	55	14.5	23.6	21.8	3.6	18.2	18.2
	5억~10억 미만	23	8.7	21.7	13.0	4.3	17.4	34.8
	10억 이상	56	12.5	32.1	19.6	1.8	26.8	7.1
	무응답	24	8.3	33.3	12.5	4.2	25.0	16.7
업종	서비스업	61	13.1	27.9	14.8	3.3	27.9	13.1
	도소매업	51	15.7	17.6	23.5	5.9	15.7	21.6
	제조업	70	10.0	35.7	18.6	1.4	21.4	12.9
	기타업종	6	0.0	33.3	0.0	0.0	0.0	66.7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5	20.0	40.0	20.0	0.0	20.0	0.0
	일반과세자	180	12.2	28.3	17.8	2.8	21.1	17.8
	간이과세자	3	0.0	0.0	33.3	33.3	33.3	0.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181	12.2	28.7	17.7	3.3	21.5	16.6
	비해당	7	14.3	14.3	28.6	0.0	14.3	28.6

다. 전자고지 세액공제 금액 인지

문 23. (문 21=1 전자고지 세액공제 인식층) 전자고지 세액공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 전자고지 세액공제 인식층 가운데,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 비율은 27.7%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남
- 서비스업 사업체에서는 공제금액 인지도가 41.0%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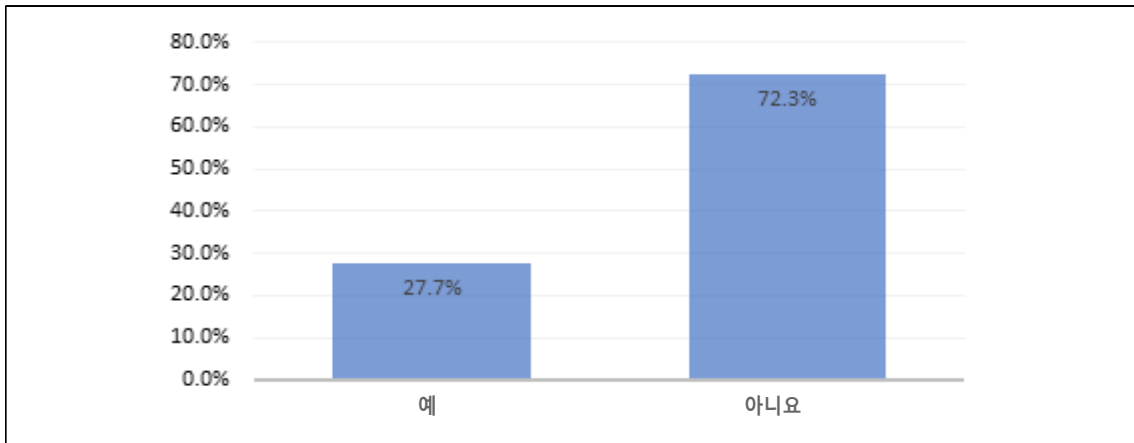
<표 VI-33> 전자고지 세액공제 금액 인지 분석(설문조사)

(단위: %)

구분		사례 수	예	아니요
전체		188	27.7	72.3
매출액	1억 미만	30	23.3	76.7
	1억~5억 미만	55	25.5	74.5
	5억~10억 미만	23	39.1	60.9
	10억 이상	56	26.8	73.2
	무응답	24	29.2	70.8
업종	서비스업	61	41.0	59.0
	도소매업	51	25.5	74.5
	제조업	70	17.1	82.9
	기타업종	6	33.3	66.7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5	40.0	60.0
	일반과세자	180	27.2	72.8
	간이과세자	3	33.3	66.7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181	28.7	71.3
	비해당	7	0.0	100.0

[그림 VI-14] 전자고지 세액공제 금액 인지 여부(설문조사)

(N=188)



라. 전자고지 선택 의향(전자고지 비이용 사업체)

문 24. (문 18=2 전자고지 비이용자) 전자고지 1건당 1천원의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앞으로 전자고지를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 전자고지 비이용자(N=127)에게 1건당 1천원 공제 금액을 알려주고, 향후 전자고지 이용 의향을 물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경우는 59.8%로 반수 이상이었음
- 세부 집단별 긍정 비율은 40.0%(‘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비해당’)에서 83.3%(‘면세사업자’)

<표 VI-34> 전자고지 비이용 사업체의 전자고지 선택 의향(설문조사)

사례 수: 전자고지 비이용자(N=127)	응답비율	
매우 그렇다	17.3%	긍정 59.8%
그런 편이다	42.5%	
그렇지 않은 편이다	29.1%	부정 40.2%
전혀 그렇지 않다	11.0%	

<표 VI-35> 전자고지 비이용 사업체의 전자고지 선택 의향 분석(설문조사)

(단위: %)

구분		사례 수	긍정	부정
전체		127	59.8	40.2
매출액	1억 미만	17	76.5	23.5
	1억~5억 미만	39	51.3	48.7
	5억~10억 미만	20	50.0	50.0
	10억 이상	32	56.3	43.8
	무응답	19	78.9	21.1
업종	서비스업	42	76.2	23.8
	도소매업	30	50.0	50.0
	제조업	51	51.0	49.0
	기타업종	4	75.0	25.0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6	83.3	16.7
	일반과세자	115	58.3	41.7
	간이과세자	6	66.7	33.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117	61.5	38.5
	비해당	10	40.0	60.0

마. 세액공제 2배 인상 시 전자고지 선택 의향(전자고지 비이용 사업체)

문 25. (문 18=2 전자고지 비이용자) 만약 전자고지 세액공제금액인 1건당 1천원에서 공제를 2배로 인상할 경우 전자고지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전자고지 비이용 사업자들에게 현 기준의 공제금액(1건당 1천원)을 2배 인상할 경우에 전자고지 이용 의향에 대해 추가 질문했을 때, 긍정 비율은 68.5%로 현행 공제금액일 때와 비교하여 8.7%p로 증가함
- 세부 집단별 긍정 비율은 50.0%(‘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비해당’)에서 83.3%(‘면세사업자’)

<표 VI-36> 세액공제 확대 시 전자고지 비이용자의 전자고지 선택 의향(설문조사)

사례 수: 전자고지 비이용자(N=127)	응답비율	
매우 그렇다	28.3%	긍정 68.5%
그런 편이다	40.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0.5%	부정 31.5%
전혀 그렇지 않다	11.0%	

<표 VI-37> 세액공제 확대 시 전자고지 비이용자의 전자고지 선택 의향 분석(설문조사)

(단위: %)

구분		사례 수	긍정	부정
전체		127	68.5	31.5
매출액	1억 미만	17	64.7	35.3
	1억~5억 미만	39	66.7	33.3
	5억~10억 미만	20	70.0	30.0
	10억 이상	32	68.8	31.3
	무응답	19	73.7	26.3
업종	서비스업	42	71.4	28.6
	도소매업	30	60.0	40.0
	제조업	51	70.6	29.4
	기타업종	4	75.0	25.0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6	83.3	16.7
	일반과세자	115	68.7	31.3
	간이과세자	6	50.0	50.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117	70.1	29.9
	비해당	10	50.0	50.0

바. 세액공제 2배 축소 시 전자고지 유지 의향(전자고지 이용 사업체)

문 26. (문 18=1 전자고지 이용자) 그렇다면, 만약 전자고지 세액공제금액인 1건당 1천원에서 공제를 절반으로 축소할 경우 전자고지를 유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전자고지 이용자(N=376)에게 현 공제금액을 절반으로 축소할 경우, 향후 전자고지 유지 의향을 물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경우는 87.2%로, 상당수가 전자고지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

- 세부 집단별 긍정 비율은 82.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비해당’)에서 100.0% (‘간이과세자’)

<표 VI-38> 세액공제 축소 시 전자고지 이용자의 전자고지 선택 의향(설문조사)

사례 수: 전자고지 이용자(N=376)	응답비율	
매우 그렇다	42.0%	긍정 87.2%
그런 편이다	45.2%	
그렇지 않은 편이다	8.2%	부정 12.8%
전혀 그렇지 않다	4.5%	

<표 VI-39> 세액공제 축소 시 전자고지 이용자의 전자고지 선택 의향 분석(설문조사)

(단위: %)

구분		사례 수	긍정	부정
전체		376	87.2	12.8
매출액	1억 미만	57	89.5	10.5
	1억~5억 미만	131	82.4	17.6
	5억~10억 미만	53	84.9	15.1
	10억 이상	91	92.3	7.7
	무응답	44	90.9	9.1
업종	서비스업	121	89.3	10.7
	도소매업	97	86.6	13.4
	제조업	132	86.4	13.6
	기타업종	26	84.6	15.4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15	86.7	13.3
	일반과세자	358	87.2	12.8
	간이과세자	3	100.0	0.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359	87.5	12.5
	비해당	17	82.4	17.6

Ⅶ. 요약 및 시사점



Ⅶ. 요약 및 시사점

- 본 연구에서는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평가함
 - 타당성 분석에서는 정책목적의 적절성, 정부개입의 근거, 지원수준의 적절성, 제도 간 중복 여부 등을 평가함
 - 효과성 분석에서는 국세청 자료와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해 제도 목적 달성 여부 및 수혜자들의 행태변화 가능성을 분석함

- 전자신고율이 100%에 가까운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축소할 필요
 - 전자신고율 증대의 여지가 적으며, 세액공제 축소 시 서면신고 전환 등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미리채움 서비스 등 전자신고의 편의성을 고려하면 행태변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국세청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본 제도의 전자신고율 증대효과가 발견되지 않음
 - 설문조사를 이용한 분석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본 제도와 무관하게 전자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영세사업자의 경우 조세 지원보다는 전자신고의 편리성을 높이는 것이 전자신고율 향상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국세청은 2022년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영세납세자가 세금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자신고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음

- 전자고지와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의 경우 향후 제도 활성화 추이에 따라 세액공제 축소 여부를 고려할 수 있음
 - 2023년 기준 전자고지율은 세목에 따라 11~16% 수준, 2022년 기준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율은 48.6%로 추가적인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됨

- 향후 전자고지율과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율의 증가 폭이 완만해지면 세액공제 축소를 검토할 수 있음

참고문헌

고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자신고 관련 조세지원제도 연구』, 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2017.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OECD, *Tax Administration*, 2023.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